

# 2024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계 상담 사례집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2024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계 상담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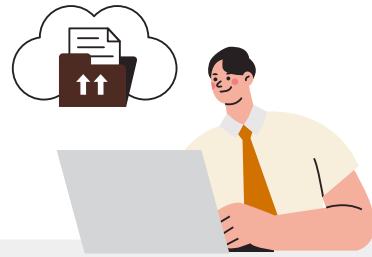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 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계 상담 사례집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안내



## 사업개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사업내용

구분	'일반' 상담 및 자문	'주식가치 평가' 자문
지원대상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승계 진행(희망) 비상장 중소기업
주요내용	가업승계 세제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가업승계 세제 기본 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	주식가치 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세부담액 추정 등
제출서류	상담·자문 내용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주식가치 평가의 경우, 적절한 주식의 상속 및 증여가액 산정 등의 참고자료로서 가업상속공제 등의 신고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참고자료 용도 외 활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상담·자문 방법]

- (일반상담) 온라인·전화·현장 상담
- (주식가치평가) 현장 상담
- \*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상시접수 \* 예산 소진시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

- ①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신청 → 자문위원 매칭
- ② 전화 : 기업 기본 정보 및 자문 요청내용 확인 후 자문위원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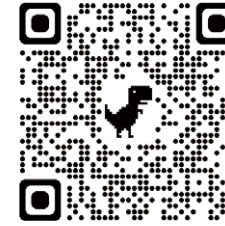
### [접수 및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2-2124-3146~3148

# 가업승계 지원제도 관련 동영상 시청 안내



**1**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및  
공제액과  
계산 방법



**2**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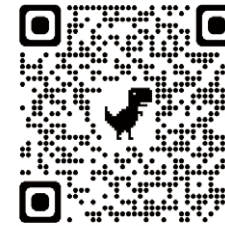
**3**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제도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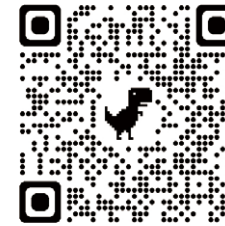
**5**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과  
신청 방법



**6**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7**  
가업승계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 CONTENTS

<b>1장</b>	승계 일반	6
<b>2장</b>	기업상속공제	36
<b>3장</b>	증여세 과세특례	130
<b>4장</b>	사업무관자산	212
<b>5장</b>	연부연납	238
<b>6장</b>	납부유예	246
<b>7장</b>	기타	260
<b>부록</b>	찾아보기	282



# 제1장 승계 일반

1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상황을 보신 후 상속으로 자녀에서 회사를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증여해서 회사를 넘겨야 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yword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간 선택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회사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검토대상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의 비율은 87.75%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회사의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검토대상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식가치

(단위 : 원)

구분	출생연도	주식수	지분율	1주당 주식가치	주식평가액	비고
A	1945년	9,450주	63.00%	203,500	1,923,056,100	본인
B	1950년	5,550주	37.00%	203,500	1,129,413,900	배우자
계		15,000주	100.00%		3,052,470,000	

#### - 기업상속재산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자산상당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식평가액	사업용 자산비율	기업상속 재산 등	기업상속공제 요건충족여부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충족여부
A	1,923	87.75%	1,687	여	여
B	1,129	87.75%	991	부	부
계	3,052		2,678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08년 4월 2일에 법인이 설립되어 가업을 영위하였으며 B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없으나 A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A 및 B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이하 '기업상속공제'라고 합니다)를 적용할 때 B의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입니다.

- 다만, A의 보유지분은 A가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설령 A와 B 모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 기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A 및 B의 지분 모두에 대하여 각각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향후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용자산비율이 100%인 경우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를 400억원(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합니다)규정을 적용할 때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치 않으나(재산-885, 2010. 11.26.),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기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2249, 2019.10.7.).

- A 및 B 모두 귀사의 사내이사(A는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렇듯 A와 B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A 및 B의 지분 모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승계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충족된 지분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향후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도 또다시 준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반대로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로 정산할 때 가업승계주식에 대하여 생전에 주식처분 등을 함으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하게 되면 일반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당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사업용자산비율이 현재 87.75%에 해당하여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가액(A의 경우 약 235백만원, B의 경우 약 138백만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일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재산과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법인 내에서 최대주주 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므로 A 및 B의 보유지분 중 어느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 A 및 B의 지분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지분을 선택한 경우에도 향후 어느 지분에 대한 상속이 먼저 있을지 예측이 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 요건을 미리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무관자산을 사업관련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부담 없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사업용자산비율은 87.75%로서 비교적 양호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시점)까지 최대한 비사업용자산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나 이때 역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예상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다시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것을 권합니다.

- 더불어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는 “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라고 해석하였는 바,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A 및 B의 지분 중 어느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한 후, 예를 들어 A의 보유지분이 많아 A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B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6억원(10년 이내 누적 공제액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 후 자녀에게 증여(또는 상속) 등을 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20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으로 지분구조는 대표이사인 본인 이○○이 49%를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가 51%를 보유 중 입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란 관계회사를 말하는데 저와 제 처(妻)가 각각 28%, 장남이 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지분가치를 미리 계산해본 결과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사이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만약 갖추었다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회사를 승계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간 선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각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가업규모 및 업종 요건 : 별표에 따른 업종인 건설업(토목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함(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업경영기간 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이○○님이 회사 설립일인 2001년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가량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③-1. 피상속인 요건 중 최대주주지분 요건 : 검토대상 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검토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이○○님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 ③-2. 피상속인 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이○○님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재직 중에 있어 전체 가업기간의 100%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였음
- ④ 상속인 요건 : 상속인(자녀)은 검토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검토기준일 전 2년 이상 사내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됨

• 검토 결과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600억원을 한도로 하는 바, 검토기준일 현재 2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에는 4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 그러나 해당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검토대상회사의 가치가 회사가 기 평가하여 제시한 주가가액인 40억원(사업용자산비율이 100%로 가정함)이라 가정하는 경우 3억원<sup>1</sup>이나 되며, 주식처분 제한 및 업종변경 등 5년간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이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서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이한 점은 해당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상속세로 정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다시 상속세로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 이와는 달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한도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sup>1</sup>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 재산 공제) 제1항(직계존속 5천만원),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같은 법 제56조(증여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납부할 증여세액} = (40\text{억원} - 10\text{억원}) \times 10\% = 3\text{억원}$$



증여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가업승계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sup>2</sup> 이미 납부한 3억원의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달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이○○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로 정산할 때 생전에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이○○님이 소유한 주식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또한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므로 4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님의 생전에 사전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3억원을 납부하기 보다는 향후 이○○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받는 것이 회사의 규모, 지분구조 등으로 보아 세부담 최소화의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2</sup> 예를 들어, 검토대상회사의 사업무관자산이 없어 가업상속재산 전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거나 피상속인인 이○○님의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약 1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님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0'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커 환급되지 않게 됩니다.

## 3

당사는 200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제 나이가 71세로 고령이고 작은 녀석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도 이 녀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승계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한 바 없으며 세금부담도 세금부담이지만 가업승계는 후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eyword 사전 증여시 일반 증여 선택



검토대상회사의 대표이사 인터뷰 결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승계를 완료할 것인지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광범위한 범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 우선 이번 승계 프로그램의 주가 되는 검토대상회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안○○	본인	보통주	6,000주	60.00%	
한○○	배우자	보통주	3,000주	30.00%	
안◇◇	장녀	보통주	500주	5.00%	
안□□	차녀	보통주	500주	5.00%	후계자
계			10,000주	100.00%	

- 본격적인 컨설팅 업무에 앞서 검토대상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를 대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56,859	
②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㉓ 순자산가액	1,619,810,141	
㉔ 총발행주식수	10,000주	
㉕ 1주당 순자산가액 (㉓/㉔)	161,981	
③ 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158,908	
④ 1주당 순자산가액×80%	129,585	
⑤ 1주당 평가액=Max【③, ④】	158,908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차례로 봅니다.

① 첫 번째 안은 기업승계 세무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승계를 완료하는 안으로 이에 따르면 기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 한○○의 주식 3,000주를 안○○에게 증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이유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기업상속공제까지 고려해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증여자의 요건을 충족한 안○○에게 모든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증여세 결정·경정분부터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배우자 한○○의 주식을 안○○에게 이전한 후 과거와 같이 10년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안은 기업승계 세무 프로그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증여로 승계를 종결하는 방식을 simulation하였습니다.

- 인수할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안○○(父)과 한○○(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1주당 주식가치	보유주식수	지분가치	비고
안○○	158,908	6,000주	953,448,000	
한○○	158,908	3,000주	476,724,000	

- 위와 같이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안○○과 한○○의 지분을 모두 증여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1,430,172,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거 증여사실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1,380,172,000	
한계세율	40%	
증여세 산출세액	392,068,800	
신고세액공제	11,762,064	신고세액공제율 3% 반영
차감 납부할 세액	380,306,736	

• 전술한 두 가지 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차녀인 안□□은 약 3.8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할 여력이 되며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무프로그램 이용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증여로 승계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의 과거의 실적에 대한 Interview 결과 회사의 매출실적은 변동이 매우 심하며 2023년에 실적부진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지분증여작업을 바로 실행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정교하게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의뢰하는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 4

저는 25년간 땅콩, 초콜릿 등 먹거리를 도소매하는 회사를 경영해왔으며, 이제 70세가 넘어 자식에게 기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는지와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Keyword**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 회사의 가치는 대략 5억 원으로써 이 중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업력에 따라 최대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낮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가치가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최대주주 등 지분을 50% 이상)에 해당할 것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상속공제는 10억 원이므로 개인재산이 7억 원(10억 원 - 3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보면 규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가업승계 세무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를 적용받기 보다는 이러한 가업승계 대한 세무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로 승계를 종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수할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업가치	지분율	지분가치	비고
본인	500,000,000	60%	300,000,000	
배우자	500,000,000	30%	150,000,000	
장녀	500,000,000	10%	50,000,000	
계		100%	500,000,000	

- 위와 같이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을 모두 증여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sup>3</sup>.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45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거 증여사실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400,000,000	
한계세율	20%	
증여세 산출세액	70,000,000	
신고세액공제	(2,100,000)	신고세액공제를 3% 반영
차감 납부할 세액	67,900,000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승계를 종결하는 경우에도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약 67.9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질의자의 장녀는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에 대해서 현재 납부할 여력이 되는 점, 가업승계

<sup>3</su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할 때 각각 계산하지 않고 증여하는 주식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무프로그램 이용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증여로 승계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는 이유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증여받는 날부터 5년 이내에 ① 가업의 미승계, ② 가업에 미종사, ③ 증여받는 주식지분의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역시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가업상속재산을 처분, ② 가업에 미종사, ③ 주식지분의 감소, ④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은 물론,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sup>4</sup>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의 규정을 모두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는 가업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써 이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실지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가산한 금액)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이 과세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 ①+②】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율)

## 5

회사의 지분을 2016년 7월에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았으며 증여를 받을 때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에 해당하여 30%를 할증하여 세액계산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후 할아버지보다 부모님께서 먼저 사망하여 손자인 저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며 현재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손자인 저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를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내를 합산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받지 못하였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Keyword 대습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생전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과세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산하며, 질의하신 내용의 쟁점은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상속인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될 것이냐,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한다면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분	합산기간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sup>5</sup>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 54275판결).
- 즉,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 해당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날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2016년 7월에 증여받은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5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3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본인 명의 토지 200평과 건물을 법인에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9백 5십만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세금혜택을 받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승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부친의 회사는 과세특례를 통해 승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검토기준일에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서는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친께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이와는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기준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친의 회사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개인이 법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부친의 명의의 개인사업체의 업종을 식품제조업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종은 제조업/식품류로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친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아버지 개인이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10억원 정도로 예상될 때 해당 토지 1/2을 질의하신 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5억원 정도이며, 증여세는 78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요즘 국세청에서는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부동산의 증여 규모 및 금액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먼저 미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의 1/2를 증여하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토지 1/2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절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회사의 장기차입금 1,16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은행에서 최근 2년 이내 해당 물건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시가 범주 밖에 있는 감정평가일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시지가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7

저희 회사는 금속가구를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저는 최근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회사를 승계받은 새내기 경영자로 승계받은 지분을 합하여 77.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회사의 나머지 지분 약 23%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작은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현재까지 그 상태로 지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혹시 나중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다음 명의신탁 된 작은 어머니의 지분을 되찾아올 수 없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분을 되찾게 된다면 이때 세무관계가 궁금합니다.

## Keyword 명의신탁 증여의제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증여자인 부친의 실질적인 지분 22.67%, 즉 검토기준일 현재 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을 부친의 사망 후 해당 주주 등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추후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재삼46014-1698, 1994.06.24.).
- 즉,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수탁자인 작은 어머니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질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개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게 되며, 만약에 환원하게 되는 시점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sup>6</sup>, 추후에 상속이 개시될 검토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잘 파악하여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피상속인의 주식임이 확인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주식의 경우 동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참고하여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8

당사는 개인사업체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자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상담 중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5년 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현물출자할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결국 현물출자한 개인이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꼼수 같아 찜찜하여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가능하시다면 법인전환시 부담해야 할 기타의 세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yword**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액의 세법상 효과 및 부담해야 할 지방세의 종류 등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② 거주자가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③ 사업양수도방법<sup>7</sup>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③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sup>8</sup>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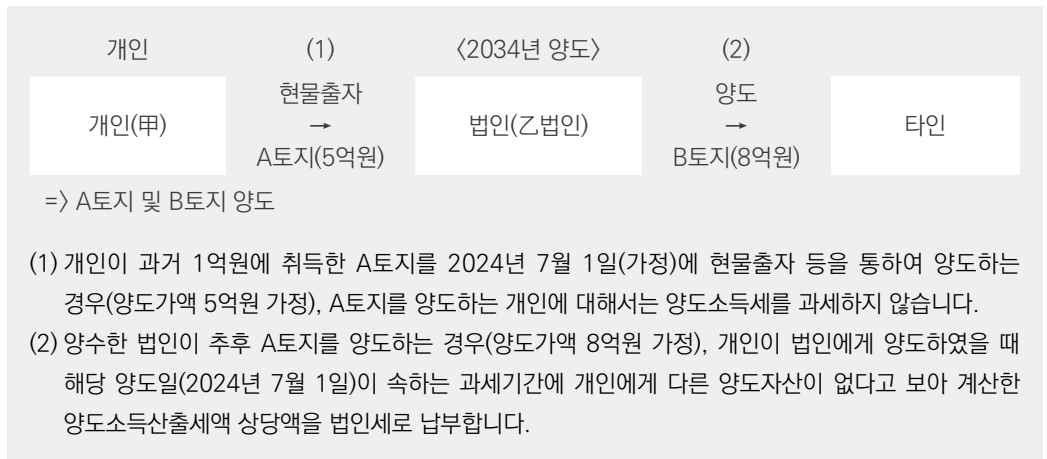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 상속인 등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설령 검토대상회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단서에서 이에 따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이 50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어 본 사례에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여기서 ‘사업양수도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즉, 법인전환)하는 것인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므로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에 신설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이러한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에서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중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중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법령서식을 중심으로 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사실관계(가정 포함) 및 과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승계받은 사업이 일정기간 계속되고(사업의 계속성), 개인사업자의 지배력이 유지(지분의 연속성)될 때 사업조직의 동일성이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중단하고 거주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 ① 신설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사업의 계속성 중단)
-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지분이 연속성 중단)

- 따라서 이러한 이월과세의 중단기간인 5년이 경과하거나 이월과세의 중단기간 중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법인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은 물론,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현물출자 당시 시가 5억원) 10년이 경과 후 8억원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① 개인단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인 개인(甲)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乙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乙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甲)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월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과 동시에, “② 법인단계의 양도차익 3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 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산출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인 바,
-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질의하신 내용 중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5년 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현물출자할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결국 현물출자한 개인이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월과세의 중단기간인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면제효과’가 아닌 법인전환을 하기 전 개인사업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액에 대해 단순히 납부시점을 이연하는 ‘이연효과’이기 때문에 이를 수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무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토지처분이익 3억원(8억원-5억원)을 일반 법인세 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산출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 법인전환시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인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의 번에 기재되어 있는 이월과세액을 확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양도자)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		
양수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	⑨ 생년월일		
	⑩ 주소	(전화번호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토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100㎡	2020.01.01.	100,000,000
⑯ 양도일	⑰ 양도가액	⑱ 이월과세액	⑲ 비고	
2024년 8월 XX일	500,000,000	130,000,000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서식의 ⑰번에 위 ‘(1)’에서 살펴본 이월과세액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1. 3. 16.> (3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손금산입				
<생략>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⑯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30,000,000	
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제7항	66A		
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제3항	66B		
⑱ 합계		667	130,000,000	
5. 추가납부세액				
<생략>				

(3) 해당 이월과세 납부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번에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2.> (앞쪽)


사업 연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sub>1</sub>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조정 금액	⑩ <sub>2</sub> 익금산입	02		
		⑩ <sub>3</sub> 손금산입	03		
		⑩ <sub>4</sub> 차가감소득금액 (⑩ <sub>1</sub> + ⑩ <sub>2</sub> - ⑩ <sub>3</sub> )	04		
		⑩ <sub>5</sub>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⑩ <sub>6</sub>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② 과세표준계산	⑩ <sub>7</sub>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 <sub>4</sub> + ⑩ <sub>5</sub> - ⑩ <sub>6</sub> )	06			
	⑩ <sub>8</sub>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⑩ <sub>8</sub> = ⑩ <sub>7</sub> )				
	⑩ <sub>9</sub> 이월결손금	07			
	⑩ <sub>10</sub> 비과세소득	08			
	⑩ <sub>11</sub> 소득공제	09			
	⑩ <sub>12</sub> 과세표준 (⑩ <sub>8</sub> - ⑩ <sub>9</sub> - ⑩ <sub>10</sub> - ⑩ <sub>11</sub> )	10			
③ 산출세액계산	⑩ <sub>13</sub> 선박표준이익	55			
	⑩ <sub>13</sub> 과세표준 (⑩ <sub>12</sub> + ⑩ <sub>13</sub> )	56			
	⑪ <sub>1</sub> 세율	11			
	⑪ <sub>2</sub> 산출세액	12			
	⑪ <sub>3</sub>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⑪ <sub>4</sub> 세율	14			
④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⑬ <sub>1</sub>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30,000,000		
	⑬ <sub>2</sub> 차감납부할세액 (⑬ <sub>1</sub> - ⑬ <sub>3</sub> + ⑬ <sub>4</sub> )	30	130,000,000		
	양도차익	⑬ <sub>3</sub> 등기자산	31		
		⑬ <sub>4</sub> 미등기자산	32		
		⑬ <sub>5</sub> 비과세소득	33		
		⑬ <sub>6</sub> 과세표준 (⑬ <sub>3</sub> + ⑬ <sub>4</sub> - ⑬ <sub>5</sub> )	34		
⑤ 법인세배분액	⑬ <sub>7</sub> 세율	35			
	⑬ <sub>8</sub> 산출세액	36			
	⑬ <sub>9</sub> 감면세액	37			
	⑬ <sub>10</sub> 차감세액 (⑬ <sub>8</sub> - ⑬ <sub>9</sub> )	38			
	⑬ <sub>11</sub> 공제세액	39			
	⑬ <sub>12</sub>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⑥ 법인세배분액	⑬ <sub>13</sub>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⑬ <sub>14</sub> 가감계 (⑬ <sub>12</sub> - ⑬ <sub>13</sub> + ⑬ <sub>14</sub> + ⑬ <sub>15</sub> )	41			
	기납부세액	⑬ <sub>16</sub> 수시부과세액	42		
		⑬ <sub>17</sub> ( ) 세액	43		
		⑬ <sub>18</sub> 계 (⑬ <sub>17</sub> + ⑬ <sub>18</sub> )	44		
	⑬ <sub>19</sub> 차감납부할세액 (⑬ <sub>14</sub> - ⑬ <sub>19</sub> )	45			

-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부과되는 제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설립의 단계와 부동산이전을 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관련규정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니 법인전환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	부담 여부	관련 규정	비고
법인설립	1 등록면허세	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중과)
	2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사업자등록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이 법인전환시 중과예외
부동산이전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 충족시
	2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요건 충족시
	3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4년말까지 요건충족시 75% 감면
	4 취득세감면분농특세	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과세
	5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중소기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

**9** 우리 회사는 개인사업체로서 사전증여를 받고자 하였으나 법인사업체가 아니면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표자인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의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받은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Keyword**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승계받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이하 ‘甲’이라고 합니다)는 2024년 중 부친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이하 ‘가업’이라고 합니다)를 승계하기 위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일체를 증여받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금원이 부족함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이 가업에 공하던 가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후 수증자인 甲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승계한 가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대표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자가 된 경우로 사업자가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예규회신하고 있었습니다(소득세과-3889, 2008.10.24. 등)
-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에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조심2019서1569, 2019.09.03.).
- 해당 심판례 이후 국세청은 위에서 언급한 해당 유권해석(소득세과-3889, 2008.10.24. 등)을 삭제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예규회신하였습니다.<sup>10)</sup>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장용 부동산이 포함된 사업을 증여받으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금원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자체는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앞서 본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승계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 증여자의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건물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수증자가 이를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가업의 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달리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10)</sup> 국세청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제2장

# 가업상속공제



**1**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인력 및 자산유지 등의 자세한 내용과 상속 및 승계자가 여러 명이라도 가능한지 등 전반적인 내용, 요건, 세무, 한도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Keyword** 가업상속공제 종합

 검토대상회사의 대주주인 조○○ 대표이사와 인터뷰 결과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승계를 완료할 것인지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 이번 승계 프로그램의 주가 되는 검토대상회사의 주요현황 및 설정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조○○	본인	보통주	128,220주	40.07%	
조△△	장녀	보통주	4,000주	1.25%	
자기주식	기타	보통주	28,400주	8.88%	
임직원	기타	보통주	74,303주	23.22%	
기타	기타	보통주	85,077주	26.59%	
계			320,000주	100.00%	

- 본격적인 컨설팅 업무에 앞서 검토대상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주가가치는 5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8,695	
②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 순자산가액	10,557,171,078	
㉡ 총발행주식수	320,000주	
㉢ 1주당 순자산가액 (㉠/㉡)	32,991	
③ 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30,413	
④ 1주당 순자산가액×80%	26,393	
⑤ 1주당 평가액=Max【③, ④】	30,413	

- 회사의 검토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무관 자산의 내역과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이 비율은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① 사업무관자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사업용토지	-
업무무관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	440,388,953
과다보유현금	-
법인의 영업무관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sup>1</sup>	3,613,424,850
사업무관자산 총액	4,053,813,803

② 사업무관자산비율

(단위 : 원, %)

구분	금액
사업무관자산가액(A)	4,053,813,803
총자산가액(B)	19,675,014,974
사업무관자산비율(A/B)	20.60

- 피상속인의 검토대상회사의 지분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은 3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 이와 같이 회사와 인터뷰 결과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에 따른 조세부담액을 비교해 보고자 하며, 이하에서 차례로 봅니다.

- 제1안 : 가업승계 세무 프로그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만을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안을 simulation하였음

<sup>1</sup> 검토대상회사의 사업무관자산집계액 중 '법인의 영업무관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36.13억원 중 6.1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약 5.1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검토대상회사가 공제조항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예치한 출자금으로서 보증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보증보험에 예치된 예치금등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본 검토에서는 동 출자금 상당액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실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이를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후 과세당국에서 이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안 : 가업승계 세무 프로그램에 따르지 아니하고 검토기준일 현재의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승계를 종결하는 방식을 simulation하였음

- 참고로 검토 전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최종지분보유내역 및 지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으로 인한 지분증감 내역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 후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조○○	본인	128,220	40.07%	(128,220)	-	0.00%
조△△	장녀	4,000	1.25%	128,220	132,220	41.32%
자기주식	기타	28,400	8.88%	-	28,400	8.88%
임직원	기타	74,303	23.22%	-	74,303	23.22%
기타	기타	85,077	26.59%	-	85,077	26.59%
계		320,000	100.00%	-	320,000	100.00%

- 또한 회사와 인터뷰 결과 회사는 검토기준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대상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업규모 및 업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인 “정보통신업 (58~6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함(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업경영기간 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조○○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업 개시일인 1999년 12월 16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음
- ③-1. 피상속인요건 중 최대주주지분 요건 : 검토기준일 현재 조○○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이상<sup>2</sup>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서면법규과-1386, 2013.12.22.)하며 그에 따라 최대주주지분요건에 대한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	지분율
206,523주	291,600주	70.82%

③-2. 피상속인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조○○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2012년 4월 6일부터 검토기준일까지 회사의 사업영위기간 약 25년 중 23년 가량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회사와의 Interview 및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됨

④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은 검토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sup>3</sup>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는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유무에 따른 조세부담액을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시의 조세부담액만을 계산하였습니다.

① 전술한 제1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만을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완료하는 안

- 조○○님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부담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가업상속재산가액(A)	6,411,000,000	
이외의 상속재산가액(B)	3,000,000,000	(*1)
상속세 과세가액(A+B=C)	9,411,000,000	
가업상속공제	(5,090,334,000)	(*2)
이외의 상속공제	(1,000,000,000)	(*3)
상속세 과세표준	3,320,666,000	
한계세율	50%	
산출세액	1,200,333,000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36,009,990)	
차가감납부할세액	1,164,323,010	

(\*1) 가업상속재산외의 상속재산은 인터뷰 결과 30억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업승계 주식이액	(1-사업무관자산비율)	가업상속공제액
64,110,000,000	79.40%	5,090,334,000

(\*3)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의 합계액인 1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3 회사와의 Interview 결과 장녀인 조△△님은 검토기준일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검토대상회사에서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대상회사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전술한 제2안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상속으로 승계를 종결하는 안

- 조○○님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부담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기업상속재산가액(A)	6,411,000,000	
이외의 상속재산가액(B)	3,000,000,000	(*1)
상속세 과세가액(A+B=C)	9,411,000,000	
기업상속공제	-	
이외의 상속공제	(1,000,000,000)	(*2)
상속세 과세표준	8,411,000,000	
한계세율	50%	
산출세액	3,745,500,000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112,365,000)	
차감납부할세액	3,633,135,000	

(\*1) 기업상속재산외의 상속재산은 인터뷰 결과 30억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기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의 합계액인 1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 따라서 사례별 각각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출이 예상되는 총 조세부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① 제1안	③ 제3안
사전증여시 증여세 부담액(과세특례)	-	-
증여세 부담액(A)	-	-
조○○님 지분 상속시 상속세액	1,164.3	3,633.1
상속세 부담액(B)	1,164.3	3,633.1
<b>총 조세부담액(A+B)</b>	<b>1,164.3</b>	<b>3,633.1</b>

Appendix

1. 사업무관자산과 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에 따른 조세부담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상속공제 등을 적용할 때 기업상속재산 등은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이라고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업자산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함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해당사항 없음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 : 해당사항 없음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 하는 자산 :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장단기대여금 약 4.4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 해당사항 없음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예금 약 30억원, 매도가능금융재산 약 6.13억원 등 총 36.13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결국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상속받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법인의 기업가치 그 자체가 아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상속공제시 적용받을 실질적인 공제율이 100%가 아닌 100%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을 차감한 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ext{기업상속재산} = \frac{\text{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 이에 따라,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와 같다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조세부담이 적용받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 검토대상회사는 검토기준일 현재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목적 등으로 취득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sup>4</sup>.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상속공제액을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자산가액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대상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현재 기업상속공제율은 100%가 아닌 약 80%(1 -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4 동 비율은 검토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계산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검토안 중 제안(가업상속공제만을 적용하여 가업승계하는 방안)을 각각 사업무관 자산가액비율이 검토기준일 현재와 같은 약 20.60%인 경우와 이를 개선하여 사업무관 자산가액비율이 0%라고 가정할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무관자산비율(약 30%)	사업무관자산비율(0%)
	① 제1안	② 제2안
총 조세부담 예상액	1,164.3	620.8

- 이처럼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가업상속공제비율이 100%가 되며 이에 따른 절세효과는 최대 약 5.44억원에 이르게 되므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축소여부에 따라 세금없는 가업승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또한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모두 회피가능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와 Interview 결과에서도 장부가액 1천만원인 (주)파란돌(가명, 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사업무관자산항목의 대다수가 회사의 실행의지만 있으면 회피할 수 있어 회피가능 난이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적정한 관리를 권고합니다.

구분	회피가능여부	회피난이도	회피방법 예시
비사업용토지	N/A		
업무무관임대 부동산 등	N/A		
대여금	회피 가능	하	대여금 상환
과다보유현금	N/A		
법인의 영업무관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회피 가능	하	금융상품의 해지 및 매각

## 2. 추후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관련 기타 사항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제1안)>의 종합적인 세부담과 현재의 상태로 가업승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상속으로 승계를 종결하는 경우(제2안)의 세부담을 비교하였을 때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계를 수행하게 될 제1안과 제2안의 경우가 가업상속시점의 조세부담을 비교할 경우 약 24.7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 대표이사의 장녀인 조△△님은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근무계획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인 요건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할 것\_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세법에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며, 이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위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③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기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완화

2023년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대 특구' 제도(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특구) 등을 도입하여 지방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 중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5항을 신설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을 받는 분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곧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상속인 요건 중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은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고 합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즉, 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고 합니다)로 이전한 경우
-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50%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이는 “①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항에 따른 상시근무인원을 말합니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 “②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당사는 1988년 개업하여 설립한지 40년 가까이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모친께서 77세로 연로하여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구조는 제가 모친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6년에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어머니와 공동대표이사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대주주가 아닌 어머니의 지분을 제가 상속받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와 적용받지 않은 경우의 대략적인 세부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Keyword**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세부담 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 측면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질의하신 내용은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보유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검토대상회사의 주주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관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이○○	본인	28,800	48.00%	
심○○	모친	20,400	34.00%	
기타주주	기타 친족	10,800	18.00%	
합계		60,000	100.00%	

-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그룹)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 별로 계산하여 해당 법인에서 보유 지분율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질의에서는 모친을 말합니다)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모친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다음으로 요청하신 바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simulation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검토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5% 성장을 가정하였을 때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회사의 총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는 바, 그 기업가치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추정액]**

구분	금액
한주 당 주식가액	약 173,210원
주식 수	60,000주
총 보유중인 주식의 지분가치	10,392,600,000원

- 따라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기업상속공제여부에 따른 상속세 부담의 차이를 simulation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와 적용받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약 15억 11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우	비고
기업상속재산가액	3,533,484,000	3,533,484,000	(*)
기타상속재산가액	4,000,000,000	4,000,000,000	(**)
상속세 과세가액	7,533,484,000	7,533,484,000	
기업상속공제	-	(3,115,119,494)	(***)
기타의 상속공제	(500,000,000)	(500,000,000)	(***)
상속세 과세표준	7,033,484,000	3,918,364,506	
상속세 한계세율	50%	50%	
상속세 산출세액	3,056,742,000	1,499,182,253	
신고세액공제	(91,702,260)	(44,975,467)	
납부할 세액	2,965,039,740	1,454,206,786	

(\*) 기업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1주당 주식가치	보유주식수	지분가치	비고
심〇〇	173,210	20,400주	3,533,484,000	

(\*\*) 기업상속재산외의 상속재산은 인터뷰 결과 40억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기업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sup>5</sup>

(단위 : 원)

기업승계 주식가액	(1-사업무관자산비율)	기업상속공제액
3,533,484,000	88.16%	3,115,119,494

(\*\*) 심〇〇는 배우자가 없어 기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액인 5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5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인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기업상속재산} = \left\{ \begin{array}{l} \text{상속재산 중 기업에} \\ \text{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end{array}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더불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 없는 기업의 승계를 적용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기업상속재산을 처분, ② 기업에 미종사, ③ 주식지분의 감소, ④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로서 회사의 대표자이신 부친께서 지병악화로 인해 급하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알아보던 중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사의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회사도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eyword**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자산가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 중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업력에 따라 600억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며, 가업상속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되 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요청하신 대로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업규모 및 업종 요건 : 별표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 해당 업종의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인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해당함(독립성 요건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업경영기간 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피상속인이 1985년 회사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됨
  - ③-1. 피상속인요건 중 최대주주지분 요건 :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는 개인사업체로서 최대주주지분 요건이 경우 해당사항 없음
  - ③-2. 피상속인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자 재직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피상속인이 1974년 회사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재직한 바 있어 전체 가업기간의 100%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였음
  - ④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은 검토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명의 자녀 중 1982년생인 차남에게 가업을 상속하고자 하며 차남은 검토기준일 현재 과장으로 검토대상회사에서 약 5년전부터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 확인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대상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여기에 더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 더불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용 자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sup>6</sup>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sup>7</sup>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재산세과-705, 2010.09.17.외 다수), 검토대상회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검토기준일 현재 100%)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2014년 1월 1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가업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③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sup>6</sup> 2009년 11월 27일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토기준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및 제11장(무형자산)을 참고하면 됩니다.

<sup>7</sup>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용토지, 건물 등은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당사는 2004년 7월 24일 어머니의 명의로 유한회사(전세버스 운수업 및 국내외여행알선)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5년 3월 24일 대표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 후 2024년 6월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5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기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9년에 불과하고 저는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전무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Keyword**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아래와 같이 가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요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하 차례로 봅니다.

-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가업 요건 중)
- ②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피상속인 요건 중)
-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상속인 요건 중)

• 기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검토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계산은 위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피상속인은 회사설립일인 2004년 7월 27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이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관련하여 확인되며, 2004년 7월 27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검토대상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기간 중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제 모든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내부 결재 서류가 다수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검토대상회사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과 같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재직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
- ③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 이 경우 법인가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최대주주 등 지분율 40% 이상 계속보유)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재직기간 역시 법인의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50% 미만인 검토대상회사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 즉, 아버지와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 되는 시점인 회사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19년 10월(2004.07.24.~2024.06.05.)이며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5년 3월 24일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약 8년 10월로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인 9년 11월에 미달하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을 재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는 검토기준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53세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세법에서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 중 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도 확대하여 ‘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②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종사기간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5

당사는 부산에서 1984년 설립 후 방사선과 치과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지분구조는 제가 34.04%, 처(妻)가 4.13%, 장남이 9.6%, 장녀가 2.23%로 합하면 저의 가족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참고로 저는 대표이사를 영위하다가 4년 전인 2020년 중 퇴사 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대표이사도 아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추후 제가 죽으면 제 지분을 물려받는 아들이 가업상속에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해야 하는지요?

**Keyword**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가업을 경영한 기간 별로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 오다가 나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직접 경영이 어려운 경우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있는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즉 중소기업을 창업해 1984년부터 직접 경영해 온 질의자처럼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직접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후 이와는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sup>8</sup>이 있었고 피상속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의미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시 말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과세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존의 예규와 다르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요구하였던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사유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즉, 2007년 12월 31일 상속세법 개정 이전에는 “가업상속”의 정의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에 해당하여야 “가업”으로 보았으며,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 2007년 말 상속세법 개정 시에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수정하여 법 제18조 제2항으로 상향 입법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계속 영위한 사업의 연수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사망 시까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진 것입니다. 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속세법 개정 전	2007년 말 상속세법 개정 후	비고
법 제18조 제2항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에 있던 계속 경영 요건을 법으로 상향 입법함. 이때 시행령에 있던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어짐.

8 조심 2013중0032, 2013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결과, 피상속인이 1987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뇌출혈로 심신이 상실했고 2008년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사망한 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은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보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인 대표자로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전체 기간의 60%를 초과한 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구분	상증세법 개정 전	2007년 말 상증세법 개정 후	비고
시행령 제15조	<p>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p> <p>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p> <p>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p>	<p>[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일부개정]</p> <p>가업상속에 관한 정의 요건이 없어지고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으로 상향 입법됨.</p>	<p>시행령에 있던 계속 경영 요건을 법으로 상향 입법함.</p> <p>이때 시행령에 있던 “상속개시일 현재” 라는 문구가 없어짐.</p>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온 유권해석은 지속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2010.7.8., 재산세과-095, 2012.03.07.)을 하였습니다.

- 이어서 나온 2014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나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1177(상속증여세과-622), 2021. 9. 3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 8. 25. 등). 즉, 현재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예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유가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납세자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재해석한 것으로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인해 사실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질의자의 경우에도 다른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 당시 검토대상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이 추후 기업상속에 대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 6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계속 경영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상태(대표이사 재직 포함)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2024년 12월) 다시 재취임(2027년 1월)할 경우 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의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 가업의 경영기간 : 2001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대표이사직 중단기간 : 2025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대표이사직 재취임 : 2027년 1월 1일

**Keyword**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서 잠시 물러난 기간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의 쟁점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가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와 “② 대표이사로 재직할 경우에만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인 것으로 보이며, 이하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 우선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 오다가 나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직접 경영이 어려워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 5. 30.). 즉,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러한 유권해석이 생산된 배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서 위 시행령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문구를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개정된 데 있습니다.
- 이는 곧, 피상속인이 15년(현재의 법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반드시 사망 시까지 직접 경영하여야 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10년 동안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 이후 기존의 유권해석에서 요구하였던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가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사유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 또한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 외에도 회의록, 결재과정,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증빙 등에 의해 그 기업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은 공제 요건이 아니므로,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건으로 정책목적을 달성 가능한 점, 대표이사 고령화로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힘들어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甲의 경우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나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등재 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바,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하 ‘甲’이라고 합니다)이 상속받은 검토대상회사<sup>9</sup>를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약 24년 넘게 대표이사로 경영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동생)로 약 2년간 잠시 대표이사직을 변경하였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甲이 대표이사를 맡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대상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 추가로 피상속인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아래의 (1)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2)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 ①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②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한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이 경우 법인가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최대주주 등 지분율 40%(상장법인은 20%) 이상 계속 보유)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법인의 설립일부(해당 사례에서는 당초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재산세과-219, 2010.04.02.),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으며(상속증여세과-496, 2013.08.23.),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전문경영인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합니다(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 상속증여세과-77, 2013.04.26.).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질의 상에 회사가 기재한 대표이사로 최종 등재되어 있는 날(甲이 동생으로 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기 전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은 약 24년이며, 甲은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100%의 기간 동안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甲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후 법인등기부 등본에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048년 12월 30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2)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 중 “①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요건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9</sup> 실제 甲은 검토대상회사를 2001년 가업승계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Interview 결과 확인됩니다.

7

법인 지분을 제가 49%, 아내 49%, 자녀 2%로 하고 저와 제 아내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경우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에 사망해도 남은 사람이 단독대표이사로 10년 요건을 채운다면 기업승계 조건에 부합하나요?

**Keyword** 부부간 기업영위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기업상속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규모의 기준)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④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대분류내 업종변경 가능)
  - ⑤ 10년 이내 및 상속개시 후 또는 증여 후 5년동안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등 받은 사실 없을 것
-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기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2차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상증령 §15 ③ 단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종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즉, 최초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법인내에서 최대주주 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에 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상속당시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동일하게 종전에 10년 이상 영위하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1차 과세특례)로서 그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가 다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2차 과세특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조특법 §30의6 ① 단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기업승계 후 동일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종전에 기업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승계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조특법 §30의6 ① 단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질의자가 해당 기업을 10년간 경영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질의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비록 배우자가 나머지 기간을 채운다고 해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같은 사유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령 10년이 경과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각각 기업상속공제 또는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1명의 지분에 대하여만 기업상속공제 또는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인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기업의 요건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보유요건 및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에 재직해야 한다’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지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향후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및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는 두 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를 고려하여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지난 10년간 평균매출액은 도매업의 경우 519억원, 제조업의 경우 344억원으로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당사가 도매업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와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업종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의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인(재산세과-1135, 2009.06.09.)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기준일 전 일정기간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연도	도매업	제조업	합계	도매업 비율	제조업 매출
2014년	503	-	503	100.0%	0.0%
2015년	388	141	529	73.3%	26.7%
2016년	326	173	499	65.3%	34.7%
2017년	369	174	543	67.9%	32.1%
2018년	485	195	680	71.3%	28.7%
2019년	482	345	827	58.3%	41.7%
2020년	528	522	1,050	50.3%	49.7%
2021년	502	462	964	52.1%	47.9%
2022년	884	750	1,634	54.1%	45.9%
2023년	727	682	1,409	51.6%	48.4%

• 우선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2016년 12월 20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따르면 “다. 제조업”과 “바. 도매 및 소매업”은 모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등을 계속 유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상속 후 사후관리에서도 동일업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으로서 동일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경영기간은 추가된 가업을 포함하여 사업 전부(업종 전부)를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때 주된 업종의 판단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대상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주된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재 검토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 제조업”과 “G.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이는 곧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두 다른 대분류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추후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 어느 한 업종의 매출액이 또 다른 업종의 매출액보다 커지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의 영위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업의 10년 이상 영위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변경 전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이 변경된 날부터 다시 기업의 영위기간을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sup>10</sup>.

• 즉, 2014년까지 검토대상회사의 매출액은 전액 도소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나 2015년 제조업부문을 새로이 개시하여 2023년 기말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매출액은 도소매업에서 727억원, 제조업에서 682억원이 인식되어 도소매업의 비중이 조금 더 크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추후 제조업부문의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문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토대상회사가 영위하는 2이상의 업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이 과 “G. 도매 및 소매업”에서 “C. 제조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이때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한 기업의 영위기간 산정은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sup>10</sup>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의도로 인한 주된 업종의 변경 뿐 아니라 외부환경의 변화, 즉 업황의 좋고 나쁨으로 인한 수입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업종변경여부를 불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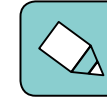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게 되어 있는 법 규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질의한 바와 같이 혹시라도 대상업종이 대분류 밖에서 변경된 경우라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추후 제조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직매장에 반출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사업의 Process를 수직계열화하거나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바랍니다.

9

얼마 전 방송에서 베이커리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카페는 안 된다고 봤는데요. 카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Keyword** 카페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규모의 기준)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④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대분류내 업종변경 가능)
- ⑤ 10년 이내 및 상속개시 후 또는 증여 후 5년동안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등 받은 사실 없을 것

- 2016년 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별표] <개정 2023. 0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목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거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기업상속공제 등'이라고 합니다)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귀 사의 경우 만일 해당 법인이 카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카페의 대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고, 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이 카페는 커피전문점에 해당하며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1	커피전문점

- 이에 따르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카페(커피전문점)<sup>11</sup>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반면에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接客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속하며,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7월에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곡물 도정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검색하여 본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작아 고민입니다. 당사가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Keyword** 곡물도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 농업, 임업, 어업(01~03)’으로 구분되는 업종 중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대상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체만을 고려하여 관념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토대상회사의 수입금액 중 곡물도정업과 도소매업의 수입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제품매출(농업)이 약 45%, 도소매업이 약 55%로써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sup>12</sup> 또한 설립 회사의 수입금액 중 곡물도정업이 도소매업의 수입금액보다 많아 곡물도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검색 결과 아래와 같이 곡물도정업을 ‘다. 제조업(10~33)’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역시 영농상속공제 대상 업종인 ‘가. 농업, 임업, 어업(01~0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산세과-270, 2012.07.24. 외 다수)

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
10511	곡물도정(쌀, 보리, 밀 등)	C. 제조업(10~34)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검토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당사 제품은 국내 자사공장에서 40%, 해외 타사 공장 OEM으로 60% 정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기업상속공제의 주업종 판단시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으로 인정되어 제조매출에서 제외되고 국내 타사 OEM생산은 제조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당사는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정확한 내용과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Keyword** 해외위탁가공의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업종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러한 주된 업종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OEM방식의 생산은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위탁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러한 OEM방식의 생산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업종으로 특정하거나 예시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아래와 같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또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을 판단할 때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으로 인정되어 일괄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서 이러한 해외에서 위탁생산하는 경우 단순히 국외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정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게 되지만,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청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다.
-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12

당사는 육실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육실제품 생산시 60%의 수입부품과 40% 국내생산 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내 제조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승계 세제 활용을 할 때 사전·사후 요건 중 업종유지 요건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될까 염려되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Keyword** 수입부품으로 제조시 기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중 업종요건 및 사후요건 중 업종유지요건에 미치는 영향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이 중 위 (1)의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 요건’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토대상회사는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60%의 수입부품과 40% 국내생산 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국내제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표] <개정 2023. 02. 28.>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다. 제조업(10~33)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내용 해설에서는 ‘제조업(10~34)’과 관련하여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이나 사전·사후 요건 중 업종유지 요건을 판단할 때 대부분인 제조업으로의 분류는 ‘장비, 노동력, 기계, 도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가공이나 제형을 통해 상품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이면 족하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부품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총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 중 수입원료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인정됩니다.
-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부품의 비중보다는 가공도 비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부품을 수입해 와서 단순히 케이스만 씌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아니지만, 여러가지 부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조립 및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가공도가 51% 이상이면 ‘Made in Korea’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13

기업상속공제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살펴보다 보니 상속인 요건 중,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에 있어 이에 대하여 문이드립니다. 가업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eyword**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나목에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접 가업에 종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와 부딪치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 언급된 “종사(從事)”에 대하여 세법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한국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 종사 :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어떤 일을 일 삼아서 함.  
어떤 사람을 좇아 섬김.

• 이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안의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반면 가업에의 종사를 반드시 급여의 지급과 연계해야 하여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더불어 후계자로서의 경영수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업 종사기간에서 배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업의 승계자 또는 후계자의 지위에서 가업에 종사한다 함은 가업기업의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피상속인의 역할을 장래에 물려받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가업종사(從事)의 개념이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에서의 근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가업기업 일부의 업무에만 피상적·단편적으로 관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쟁점규정상 가업종사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 이에 대해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로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2014 구합59832, 2015.04.16.)”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조세심판원도 역시 “가업의 승계자 또는 후계자의 지위에서 가업에 종사한다 함은 가업기업의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피상속인의 역할을 장래에 물려받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가업종사(從事)의 개념이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에서의 근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학업 중인 대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방학 등 과외시간에 가업기업에 출근하였고 가업승계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학원특강 과목도 이수하는 등 학업과 더불어 가업종사를 병행한 경우 가업종사에 해당하고,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어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종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조심2018서4591, 2020.01.13.)을 하고 있어 “가업종사(從事)의 의미”를 통상적 근로계약에서 벗어나 가업승계라는 취지에 따라 구체적·합리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8의2-15-6(기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에서 아래와 같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예시하고 있고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업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2년간의 기업 종사라는 요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수 기타비상임이사나 무보수 사내이사 같은 직책이 기업종사로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그 증명방법으로 공식적인 직책이 없이 업무상 주고 받은 메일 등의 자료로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eyword**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기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제2호 나목은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상속인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할 것
- (3)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상속인의 기업 종사여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인이 직접 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경영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하여, 납세문제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계속성과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상, ‘상속인의 기업 종사여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오로지 전적으로 기업에만 종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기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상속인이 기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 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기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도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의 종류와 형태, 그 다른 업무와 기업과의 관계 및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자인 김□□(가명)는 2021년도 12월에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2022년도 2월에 검토대상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부친인 김○○(가명)을 도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김□□는 비상임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지만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Interview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 비록 김□□가 검토대상회사에서 비상근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김□□가 검토대상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장을 퇴사한 점, 실제로 제시한 이메일을 통하여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물품의 구입주문을 받았고 그 물품과 수량,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을 처리한 매출의 규모가 검토대상회사의 전체 매출 규모에서 작은 비중을 그쳤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과거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파일들이 대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전에 기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기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인의 요건 중 “나.”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기업에 종사한 경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기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기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산-3145, 2008.10.07.)”이라고 하여 꼭 상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 기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보수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 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업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아들로서 장차 이를 상속받을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액과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법2014구합59832, 2015.04.16.)"라고 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쭙어 볼 문제는 개인사업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 요건 중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종사해야 충족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2년을 채우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인지 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eyword**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상속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6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되, 사후관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여기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에는 인격에 따라 차별을 두어 법인의 주식만을 특례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달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가업) 뿐 아니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도 해당되어 질의하신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규정은 법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2월 7일에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2017년 2월 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상속인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가업상속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4)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충족할 것 ⇒ 해당 요건은 중소기업인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이 중 질의하신 내용은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과 관련된 요건(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개정하여 상속인에 대한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상속증여-0259, 2023.07.06.), 이는 곧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기도에서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하는데 제 아들은 현재 교수로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여 현재는 며느리가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국세청 상담센터에 그럼 주식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건지 물어보니 상담센터에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주식도 며느리에게 상속해야 되는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상속인 요건 중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상속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③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④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할 것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상속인 본인이 충족해야 하지만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위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 며느리)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는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지분까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의 주체는 ‘자녀’ 외에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상속인은

‘자녀’이어야 함이 문헌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 배우자, 즉 며느리가 가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며느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족하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지분까지도 며느리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아들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사실관계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당사는 전북지역의 알루미늄 판매를 총판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 3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 슬슬 가업승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며느리가 저를 도와 회사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조금 알아보니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며느리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개인기업의 상속인 요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상속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③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하지만 이는 사업체의 인격과 지분의 소유자(상속인)가 동일하지 않은 가업법인의 지분을 승계받는 법인사업자에 국한되는 규정이고 사업체의 인격과 사업체의 소유자(상속인)가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바,

•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8-상속증여-2401[상속증여세과-205], 2019.03.05. 외 다수)이라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친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아드님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sup>13</sup>할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2년 이내에 직접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드님께서 직접 사업을 승계 받을 의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가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법인전환<sup>14</sup>한 후 지분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등은 그 배우자(며느리)가 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업승계를 계획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기업상속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 2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2024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제 해설집”을 보니 상속인 취임 요건 중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임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기타비상무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대표이사는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Keyword** 기타비상근이사의 임원 해당여부 및 미등기 대표이사 등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 충족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3)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4) 중견기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할 것

- 질의하신 내용은 이 중 “(3)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즉 임원 및 대표이사 등 취임 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임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④ 감사
  -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한편 「상법」상 임원은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13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4년 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현재 제3항 제2호 나목)을 개정하여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14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인전환 할 때 과세하지 않고 그 법인이 동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함께 법인전환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재산세과-166, 2010.03.18.)”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 등재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2023.04.19.)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즉,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하며,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며 줄여서 ‘비상무이사’ 혹은 ‘비상무’라고도 하며 이는 「상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바,

• 따라서 질의하신 기타비상무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의 공식적인 해석의 부재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타비상근이사”도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타비상근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임원으로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법인이 기업상속공제 시에 신고기한 2년 안에 상속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속개시일보다 전에 대표로 취임해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Keyword** 기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중 상속인 요건(대표이사 취임요건)



문의하신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중 상속인 요건에 관한 내용이며, 상속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4)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할 것

• 즉, 상속인 및 그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6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획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본사 등이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 ②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말합니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이렇듯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이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질의하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또는 배우자)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취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의 기간 중에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상속개시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기업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또는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 이라고 하여 자녀가 대표이사 재직 중에 가업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부친께서 2017년 12월 26일 작고하시고 제조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업종의 장래가 너무 어려워져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기업승계 사업영위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기업승계를 받은 사람도 완화된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매년 6월에 3,6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없었습니다.

**Keyword** 개정된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적용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7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가. 기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 상속인이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라.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마. 이자상당액 부과

- 또한, 기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사후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내용	종전	개정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고용유지 요건	매년 80% 또는 7년 평균 100%	5년 평균 90%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자산유지 요건 (자산처분제한)	7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제한	5년 이내 40% 이상 처분제한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같은 법 부칙 제7조(기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즉, 2017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의한 혜택은 받지 못하여 그대로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2017년 중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을 승계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토대상회사의 기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칙 제7조〉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

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개정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은 아래와 같이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과 ‘②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부칙 7조 ②).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 202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 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

②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

2. 기업용자산 유지 요건 관련 사후관리 적용

다만, 기업용자산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기업용자산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았더라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자산처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7조 ② 단서).

3. 예외사항

위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사후관리기준인 7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규정인 5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9년 8월부터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기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승계 관리기준에 고용유지(종업원수)에 대해 년 80%, 10년간 100%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매년 80% 이상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렵게 유지해오고 있으나, 이후 더욱 어려운 매출감소와 경기불황으로 구조 조정(고정비 감소)이 필요함에도 해당 요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10년이 지났을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정당할 것이 거의 명백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Keyword**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내용 및 사후관리기간의 적용방법



기업승계의 조세지원은 단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과거 고용인원의 수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용유지요건을, 임금상승이나 비경상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경우를 benchmarking하여 고용인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만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의무와 관련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제도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요건이 고용유지요건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과세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2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사업연도 고용유지요건, 즉 매년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요건을 삭제하고 누적평균 고용유지요건만을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비율도 90%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종전 10년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은 7년으로 개정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은 물론 '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7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③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9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되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2019년 중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을 승계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검토대상회사는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9년 8월 10일부터 5년이 되는 2024년 8월 10일까지 고용유지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기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안녕하십니까? 기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에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당사의 상속개시일은 2023년 10월 14일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사후 유지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상속개시일 직전 2개 년도는 2021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을 뜻하나요?
3. 가목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은 상시 근로하는 프리랜서 제외인지요?
4. 나목의 총급여액은 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모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Keyword** 고용유지요건의 사후관리 유지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프리랜서의 포함 여부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관련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수 유지 요건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개정시에는 매년 사후관리(80% 이상) 규정은 삭제하고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토기준일 현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음의 고용유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근로자수 요건	총급여액 요건
내용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sup>(*)</sup> 수의 전체 평균 <sup>(**)</sup> 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함)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이때 적용하는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하며, ‘기준총급여액’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14일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일 직전 2개 년도는 문헌 그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5년 평균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총급여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등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를 제외하지만,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만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바, 아래에서는 하나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원래 기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를 판단할 때 ‘정규직 근로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이 근로자는 제외함)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질의하신 상시 근로하는 프리랜서의 정규직 근로자 포함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요건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실상 상시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형태가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용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계약 형태,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무관련 전문가와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를 판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5년 평균 총급여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총급여액이란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sup>①</sup>)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sup>②</sup>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대주주와 그 친족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sup>15</sup>인 근로자
- 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급여와 상여(잉여금처분 상여 포함)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15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3

당사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 부친께서 2018년 2월 5일에 돌아가신 후 제가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시점에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난해에 강의를 들으니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가업으로 상속받은 자산 중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이를 매각했을 때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금이 추징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yword** 자산유지 요건과 관련한 개정 사후관리기간 적용 및 개인사업자의 이월과세 적용



알고계신 바와 같이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동안 2차례 변경된 사후관리기간과 관련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검토대상회사의 사후관리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에 따른 회사의 사후관리기간의 종료일자에 대해서입니다.

가. 기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라.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같은 법 부칙 제7조(기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8년 2월 5일 상속이 개시되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2018년 중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을 승계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2023년 2월 5일에 사후관리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sup>16</sup>

- 다만,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인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였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상속공제는 기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기업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었으나,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거액의 기업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의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실지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으로 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2014년 1월 1일 신설).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해당 자산가액 중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기업상속공제적용률)<sup>(\*)</sup>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자산의 자산가액×(1-기업상속공제적용률)

$$(*) \text{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frac{\text{기업상속공제금액}}{\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이에 따라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현재는 피상속인의 취득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었으며, 참고로 2024년 6월 30일(검토기준일)에 동 토지를 검토기준일 현재의 시가인 100억원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0,000,000,000	
취득가액	(130,000,000)	(※1)
필요경비	(20,000,000)	(※2)
양도차익	9,866,1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955,000,000	(※3)
양도소득금액	6,895,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6,892,500,000	
한계세율	45%	
양도소득산출세액	3,035,685,000	
지방소득세액	30,356,8200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등 총부담세액	3,339,253,200	

(※1) “기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기업상속공제적용률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130,000,000	100%	130,000,000

(※2) 필요경비는 부동산 양도시 증개보수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하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16 질의하신 기업용자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기업용자산 처분과 관련한 사후관리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자산처분과 관련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7조 제2항 단서).

2024년 현재 제가 80세가 넘어 나이가 많아 제가 44.61%, 아들이 49.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2024년 7월, 곧 제 모든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대표자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해줄 생각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계획대로 제가 가진 지분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대표자도 자녀 명의로 변경한다면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 적용받게 될 기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Keyword** 보유지분 전부 증여시 상속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제도로, 동 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서는 다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 그런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부친의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과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2020년 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며, 개정부칙에서 ‘이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부친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전부 증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이 없더라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법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b>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b></p> <p>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p> <p>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b></p> <p>⑨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p> <p>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25

당사는 반도체 부품, 광원 응용기계기구 부품 및 광소재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1997년 1월에 설립 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XX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22년 8월 XX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XX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법률상 'XX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을 한 경우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인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및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간의 합병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여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지만,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새롭게 가업의 영위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 즉, 법인 간 합병의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은 이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합병하거나 주주구성이 동일한 기업 간 합병으로 처음부터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게 되지만, 그 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재산세제과-186, 2015.2.17.)”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한○○(가명)은 합병 전 검토대상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라 합니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써 1992년 설립이후 합병 후인 검토기준일까지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온 점, 합병 전 회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으나 합병 후에도 합병 전 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점 등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각종 제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합병 전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회사와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의 합병 전 회사를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

당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후 아버지 김○○의 최대주주 지분이 하락하였는데 이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Keyword** 비상장회사가 SPAC과 합병 후 상장한 경우 주식보유요건



질의하신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업에 따른 ‘최대주주지분요건’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대상회사는 1997년 1월에 설립 후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XX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23년 10월 XX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5월 XX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법률상 ‘XX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검토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일인 다음날인 2024년 5월 XX일 회사명을 다시 검토대상회사의 옛 사명으로 변경하고 2024년 6월 XX일에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 기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 간 합병의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은 이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합병하거나 주주구성이 동일한 기업 간 합병으로 처음부터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게 되지만, 그 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례는 일반적인 합병(기업지배 및 통합)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유망한 비상장법인의 상장을 도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설립된 회사로서 합병 후에 비록 형식상으로는 종전의 비상장법인이 소멸하기는 하나 실질은 비상장법인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 기업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또한 기업상속의 목적이 종전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업의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바,

- 따라서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사례와 같이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피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는 곧 기업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 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검토대상회사의 지분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상장 전·후 모두 김○○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상장 전·후 모두 각각 40% 또는 20%의 지분을 보유(상장 전에는 70.49%, 상장 후에는 43.74%)하고 있음이 회사의 주주명부 및 합병관련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검토기준일 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명	상장 전		상장 후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김○○ 외	3,750,000	70.49%	16,447,387	41.27%
기타 주주	1,570,000	29.51%	11,557,532	58.73%
계	5,320,000	100.00%	28,004,919	100.00%



27

당사는 얼마 전 부친이 작고하여 현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제가 재산평가액 150억원에 상당하는 회사를 전부 상속받아 기업상속공제를 받고, 남동생에게는 부동산 등 90억원, 여동생에게는 30억원의 상속을 한 후 신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추후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무엇이고, 청구를 한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며, 기업상속공제가 취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Keyword** 기업상속재산의 유류분 청구와 유류분 보전



유류분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원칙과 피상속인 사후에 부양가족 등 상속인에 대한 부양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상속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 즉, 「민법」 제11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상속인별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sup>17</sup>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함으로써 유류분을 침해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류분권리자는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된 재산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sup>17</sup>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의 1/3에 상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되었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25일부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의 방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 범위는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았을 것(「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즉, 가업을 상속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하여 그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유류분 상속재산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대상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산종류	상속재산	각자의 유류분액	유류분 초과액	반환 대상액
상속인 甲	기업 주식	150억원	45억원 <sup>(*)</sup>	115억원	약 10.8억원 <sup>(**)</sup>
상속인 乙	부동산 등	90억원	45억원	45억원	약 4.2억원
상속인 丙 <sup>(**)</sup>	현금 등	30억원	45억원	△15억원	-
계		270억원		160억원	15억원

(\*)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 丙임  
 (\*\*)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상속재산 합계 270억 × 유류분 1/6 (1/3 × 1/2) = 45억원  
 (\*\*\*) 甲의 반환대상액은 약 10.8억원으로 이는 곧 유류분 상속재산을 말합니다(15억원(丙의 유류분 부족액) × 115억원/160억원 = 10.78125억원).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 丙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 상속인 甲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을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丙회사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지만 기업상속공제는 종전 150억원<sup>18</sup>에서 약 139.2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sup>18</sup> 상속인 요건을 제외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얼마 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부친의 유지대로 제가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회사를 계속하여 경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회사지분에 대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후 있을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분에 대해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협의분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지분 100%에 대하여 기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Keyword**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경우 해당 지분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이 확정되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5년 이내)가 없는 등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시기에 제한이 없음)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sup>19</sup>
- 이렇듯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 회사의 주식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주식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검토대상회사의 주식을 유효한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sup>19</sup>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지분 전체에 대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신○○(이하 '질 의 자'라고 합니다)과 동생 2인은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확정하고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이고 해당 협의서 제2조에서는 "일체의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은 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명목으로 신○○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현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상속재산가액을 질 의 자와 동생들이 상속받으면서 질 의 자가 동생 2명에게 협의서에 따라 약정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검토대상회사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분(약 33%)<sup>20</sup>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약 33%의 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즉 가업(여기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업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그 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이와 같이 비교적 적용대상은 확대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즉, 질 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현금이 지급된 경우 가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액 등이 변경되어 온 점, 질 의자는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과의 개별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상속재산의 전부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가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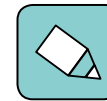
<sup>20</sup> 피상속인은 검토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의 동생 2명의 유류분 지분가액은 각각 검토대상회사의 지분의 1/6에 해당하게 됩니다.

점, 만약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여 이를 해당 지분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기업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현금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은 주식(기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금부동산 등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지분에 대한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만약 피상속인이 주식(기업상속재산) 외에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애당초 전체 지분에 대한 기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질의자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기업상속에 필요한 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기업상속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하고, 자녀 A가 법인 지분 100%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후, 자녀 B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50% 지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1) 자녀 A(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갖춤)와 자녀 B(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갖춤)는 일반상속세로 추정되는지, 자녀 A는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유지되고, 자녀 B만 일반상속세로 추정되는지요?
- 2) 자녀 A(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갖춤)와 자녀 B(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갖춤)는 일반상속세로 추정되는지, 자녀 A는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유지되고, 자녀 B만 일반상속세로 추정되는지요?
- 3) 사후관리기간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에 따라 일반상속세 추정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Keyword** 유류분 청구소송이 이미 적용받은 기업상속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6년 2월 4일 이전 상속개시분에 대해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이어야 하였으나,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의 전부”에서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유류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을 제외함으로써 유류분 반환청구로 부득이하게 가업의 전부를 1명이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상속재산에서 위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어,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곧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자녀 A가 검토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업상속재산명세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기업상속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자녀 B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기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중 50%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전제 하에 해당 유류분 상속재산은 자녀 A의 기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될 뿐이고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sup>21</sup>
- 유류분권리자인 자녀 B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경정청구 특례”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할 것
- ③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 ④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할 것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도 “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기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21-법규재산-3580, 2022.09.28.)”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동으로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기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자녀 B가 자녀 A에게 반환받은 지분 50%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지분은 소송에 따른 유류분반환액으로서 각각의 상속인에게 그 증액 또는 감액된 재산이 자녀 A에게는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자녀 B의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새로이 사후관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 아직까지 과세당국의 해석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경정 등의 청구 과정에서 혹시나 존재할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sup>21</sup> 대법원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3.03.14. 선고2010다42624, 42631 판결)”라고 판시하여 형성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0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자녀가 2명이며 회사를 2명에게 물려주고자 하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받은 후 자녀 1, 자녀 2의 가업영위기간의 적립방식에 대해 자녀 2명의 가업영위기간이 그룹으로 적립되는 것인지 자녀 1, 자녀 2가 따로따로 적립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공동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공동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공동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았다면 추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 2명이 사망하였을 때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세법에서는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201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까지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의 사망시 1회만(단, 상속인의 사망시에는 2차 가업상속공제도 가능)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예를 들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가 갑(본인) 40%, 을(갑의 동생) 30%, 병(기타) 30%인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갑과 을(70%)이며, 2014년 1월 갑의 사망으로 갑의 아들인 A가 주식 40%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을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B가 을의 주식 30%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1차 상속으로 갑의 주식을 상속받은 A가 10년 이상 경영한 후 사망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현재 공동상속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공동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했을 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2명 이상 공동상속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질 당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의 사망으로 2차 가업상속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그 상속인 각각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의 해당여부, 피상속인 요건 충족여부 및 상속인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 상속 후 당초의 공동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되어 재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이었던 피상속인 모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상속이 허용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1명이지만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단서규정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동으로 상속 받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되어 재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해석이 불명확합니다.
  - 설령 공동상속인 모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속이 반복되어 주주 상호간에 4촌(인척의 경우 3촌)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최대주주 및 보유지분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즉, 2010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이 허용되기 전<sup>22</sup>으로 개정 취지가 위 질의와 같이 가업을 공동상속으로 물려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현재 과세당국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해석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후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와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2차 가업상속이 개시되는 날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기 전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업무수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와는 별도로, 2차 상속당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별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세법규정의 미비 및 과세당국의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법령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1

당사는 2007년 8월에 설립 후 현재까지 콘크리트 타일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연매출 약 60억원의 자그마한 법인사업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세가 고령이라 슬슬 상속, 즉 승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구조는 아버지 70%와 어머니 10% 및 저와 남매의 지분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남인 제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기업을 승계하고자 합니다.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yword** 2차 가업상속공제의 가능 여부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가업승계대상자인 장남은 검토기준일 현재 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등 검토기준일 이전 약 10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회사의 조직도 및 지급명세서 등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됩니다.

(단위 : 주, 원)

주주명	관계	소유주식수	1주당 가치	보유지분의 가치	지분율(%)	비고
홍○○	부친	17,500	약 200,000	3,500,000,000	70.00%	대표이사
황○○	모친	2,500	약 200,000	500,000,000	10.00%	사내이사
홍◇◇	장남	1,000	약 200,000	200,000,000	4.00%	
홍□□ 외	차녀 외	4,000	약 200,000	800,000,000	16.00%	딸 4명
합계		25,000		5,000,000,000	100.0%	

- 또한 부친인 홍○○님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모친인 황○○님의 경우 아래의 피상속인 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관계증명서류 및 회사와의 Interview 결과 확인됩니다.

- (1)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2)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① or ② or ③)
  -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재직
  - ② 상속개시일부턴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sup>22</sup> 2016년 2월 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요건이 삭제되기 이전에는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제외함)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을 것”이라는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설령 어머니인 황○○님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상증령 제15조 제3항 단서<sup>23</sup>),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분을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장남에게 이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201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까지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의 사망시 1회만(단, 상속인의 사망시에는 2차 가업상속공제도 가능)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따라서, 가업에 해당하는 검토대상회사의 주주인 홍○○님의 사망으로 장남이 주식 70%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모친인 황○○님이 사망하여 이미 1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장남이 또 다시 주식 10%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2차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sup>24</sup>.

• 이에 따라 회사 지분 전체를 장남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sup>25</sup>을 충족하지 못하는 황○○님의 주식 2,500주를

홍○○님에게 증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바, 이유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가업상속공제까지 고려해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검토기준일 현재 보유지분이 많아 배우자간 증여등의 방법으로 지분이 이전될 때 이전에 따른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홍○○님에게 모든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어머니 황○○의 주식을 배우자인 홍○○에게 이전한 후 과거와 같이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이는 1945년생인 홍○○님이 1950년생인 황○○님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반대로 황○○님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홍○○님보다 보유지분이 현저히 작으므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추후 홍○○님의 사망 후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야 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할 것입니다.

25 어머니인 황○○님은 회사 설립 후 한번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요건(대표이사 재직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일 것”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북 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님이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있어 이 곳에 회사가 있으면 사업을 승계받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지요?

**Keyword**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내용



2023년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대 특구' 제도(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특구) 등을 도입하여 지방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 중 기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5항을 신설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을 받는 분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사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고 합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즉, 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고 합니다)로 이전한 경우

㉡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②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이는 “㉠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항에 따른 상시근무인원을 말합니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 “㉡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즉, 사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곧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또한, 사전 요건뿐 아니라 사후 요건 중 하나인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의 “상속인(또는 그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지 않으며(이 역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기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2024년 6월 25일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2호)하였습니다. 참고로 검토기준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2호에 따른 “2024년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중 현재 검토대상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2호

#### 2024년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4. 경상북도

## • 위치

No	소재지		부지명	면적(㎡)
1	구미시	공단동, 임수동, 시미동, 산동읍, 봉산리 등	구미 국가산업단지 1~5단지	1,878,796
2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229,615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185,732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373,746
4	상주시	정리면 마공리	정리 일반산업단지	373,848
합계				5,041,737

## • 세부지번

## ② 경상북도 안동시

(\*)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구역은 추후 새로 지번 부여시 고시할 예정

- 다만, 검토대상회사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기업상속공제 사전 및 사후요건 완화”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토대상회사의 본사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거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기업승계 업무 수행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장

# 증여세 과세특례

1

2011년도에 설립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자이신 부친은 회사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아버지(甲) 10%, 어머니(乙) 20%, 아들(丙) 45%, 기타주주 25%입니다. 사업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시고 참고로 어머니께는 작년에 이와는 별도로 이사를 위하여 5억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우선 검토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후 회사의 총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기업가치]**

구분	금액
한주 당 주식가액	약 41,000원
주식 수	40,000주
총 보유중인 주식의 지분가치	1,640,000,000원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 검토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②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토기준일 현재 증여자(甲)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父)에 해당함<sup>1</sup>

<sup>1</sup> 주주명부상 주주 중 모(乙)는 회사의 최대주주 중 한 명이지만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③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예정자인 수증자(장남)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에 해당함
  - ④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회사의 대표이사인 부(父)가 2011년에 설립한 회사를 10년 이상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음
  - ⑤ 최대주주등이 검토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보유여부 : 검토대상 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검토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지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甲이 소유하고 있는 4,000주(10%)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모(乙)의 지분의 이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회사의 기업가치 상 乙의 지분은 약 3.21억원에 불과하여 동 과세특례가 아닌 일반증여시에도 약 42.9백만원을 부담하면 이전이 가능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2023년 중 어머니께 이미 약 5억원의 전세자금(현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게 되면 약 1.66억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 프로그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증여로 모(乙)의 지분을 장남(丙)에게 승계하는 방식도 simulation하였지만 검토기준일 현재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를 넘어서는 5억원을 일반증여하여 공제의 Margin이 남아있지 않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의 방식으로 지분을 장남(丙)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는 乙의 지분을 甲에게 이전한 후,<sup>2</sup> 증여받기 전 甲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000주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乙의 지분 8,000주를 합한 12,000주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장남인 병(丙이)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sup>3</sup>이며 이를

<sup>2</sup> 부부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가능하여 3.21억원인 해당 지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up>3</sup>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는 분(2022년 1월 5일 이전 상속개시분도 가능)부터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함에 따라, 부친(甲이)이 배우자(乙)에게 검토대상회사의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비록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장남(丙)에 증여할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았을 때 부담하는 총부담세액과 이후 부친(甲)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액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증여하는 주식 수	12,000주	
1주당 기업가치	41,000	
증여재산가액	492,000,000	
과세특례대상 증여재산가액	492,000,000	사업무관자산 없음
증여특례공제	(1,00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	-	
한계세율	10%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불가
차감 납부할 세액	-	

-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상속세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기업상속재산가액(A)	492,000,000	(*1)
이외의 상속재산가액(B)	2,000,000,000	(*2)
상속세 과세가액(A+B=C)	2,492,000,000	
기업상속공제	(492,000,000)	(*3)
이외의 상속공제	(1,000,000,000)	(*4)
상속세 과세표준	1,000,000,000	
한계세율	30%	
산출세액	240,000,000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7,200,000)	
차감납부할세액	232,800,000	

(\*1) 회사의 지분은 이미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승계하였으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2) 기업상속재산외의 상속재산은 인터뷰 결과 20억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3) 기업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증여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업무관 자산가액비율이 0%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4) 기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액인 5억원을 합한 1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 참고로 지분이전 전·후의 지분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검토기준일 현재		부부간 증여(乙 → 甲)		승계 완료 후(甲 → 丙)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甲	본인	4,000	10.00%	12,000	30.00%	-	0.00%
乙	배우자	8,000	20.00%	-	0.00%	-	0.00%
丙	장남	18,000	45.00%	18,000	45.00%	30,000	75.00%
기타주주	기타	10,000	25.00%	10,000	25.00%	10,000	25.00%
계		100,000	100.00%	100,000	100.00%	100,000	100.00%



## 2

1988년도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제 지분을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합니다. 사전증여의 형식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넘겨주는 게 좋은지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Keyword**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한 소규모 회사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검토



검토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조△△님과 인터뷰 결과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승계를 완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이 세 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좋은지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 이번 승계 프로그램의 주가 되는 검토대상회사에 대한 주요사항 및 설정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기업가치 : 검토대상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21,720원으로 2023년 일부 지분증여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예상액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 사업용 자산 비율 :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은 65.105%입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주주현황 및 총 기업가치

(단위 : 주, 원)

구분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지분가치	비고
조△△(가명)	본인	22,404	37.34%	486,614,880	72세
조□□(가명)	장녀	24,600	41.00%	534,312,000	44세
조○○(가명)	차녀	6,000	10.00%	130,320,000	
장○○(가명)	기타친족	5,400	9.00%	117,288,000	
장◇◇(가명)	손자	798	1.33%	17,332,560	
장□□(가명)	손녀	798	1.33%	17,332,560	
		60,000	100.00%	1,303,200,000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자산상당액

(단위 : 주, 천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총 평가액	사업용 자산비율	특례대상 주식가액	일반 증여재산
조△△	조□□	22,398	21.720	486,485	65.11%	316,750	169,735
계		22,398	21.720	486,485	65.11%	316,750	169,735

• 검토대상회사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① 기업규모 및 업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업종인 “반도체 소자 제조업(26)”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함(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 해당사항 없음)

② 기업경영기간 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조△△님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1988년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

③-1. 피상속인요건 중 최대주주지분 요건 : 검토기준일 현재 조△△님과 기타 특수관계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③-2. 피상속인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조△△님이 회사 설립시부터 검토기준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됨

④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은 검토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생전에 증여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요건 충족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치 않으나(재산-885, 2010. 11.26.),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기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2249,

2019.10.7.). 조△△님은 60세 이상자이자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역시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귀 사례의 경우 현재 시점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님의 지분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조△△님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의 가치가 매우 낮고 또한 사업용자산비율이 65%에 불과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검토기준일 현재 조△△님이 보유한 지분을 후계자인 조□□ 이사에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승계하였을 경우 조세부담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증여세 과세특례	일반증여 (사업무관자산비율)	계
1주당 평가액		21,720	
증여주식수		22,398주	
증여재산가액	316,750,097	169,734,463	486,484,560
증여재산공제	(1,000,000,000)	(5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	119,734,463	119,734,463
한계세율	10%	20%	
산출세액	-	13,946,892	13,946,892
신고세액공제	-	(418,407)	(27,881,289)
차감납부세액	-	13,528,485	13,528,485

-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됨은 물론,

- (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 (2)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 (3)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향후 조△△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원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하며, 상속세로 정산할 때 다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아래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결정세액에 사후관리 위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담 세액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의 처분
- (2)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대표이사 사퇴, 주용업종 변경, 1년 이상 휴·폐업)
-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4) 고용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당사는 1987년에 설립하여 주로 섬유류 원단을 제조(하청)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6억 정도이고, 1997년에 부산시 전포동에 약 23억을 투자하여 상가를 매입 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본인이 이 기업체를 장남에게 사전증여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아 승계하고 싶은데 전문가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Keyword** 사업무관자산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판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 검토대상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회사의 주주현황과 매출현황, 주요 자산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의 주주현황

구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본인	보통주	50,000주	50%	
장남	보통주	40,000주	40%	
장녀	보통주	10,000주	10%	
계		100,000주	100%	

- 검토대상회사의 2023년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상품매출	9	
제품매출	496	주된 업종
부동산임대료 수입	54	

- 검토대상회사의 주요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단기대여금	500	사업무관자산
토지	327	사업무관자산_임대중
건물	1,581	사업무관자산_임대중
기타자산	195	사업용자산
합계액	2,603	

• 우선 요청하신 바와 같이 검토대상회사가 검토기준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면 동 과세특례에 대한 각 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여 : 검토대상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인 “원단제조업(1321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부(父)가 1987년에 설립한 회사를 10년 이상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음이 인터뷰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 ② 증여자 요건 : 검토기준일 현재 증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60세 이상의 부(父)에 해당하며, 검토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③ 수증자 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예정자인 장남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에 해당하며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검토대상회사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하에서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와 적용받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을 비교하고자 하며 이하 차례로 봅니다.

• 우선 현재 부(父)의 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지분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증여방법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비고
	구분	특례 적용	
주식수		50,000주	
주식가액		약 7,130	
증여대상 기업가치		356,500,000	
증여재산가액	26,701,850	*329,798,150	
사전증여재산	-	300,000,000 (*1)	
증여공제	(1,000,000,000)	(50,000,000)	

4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총자산가액 중 아래의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무관자산가액	세무상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	비고
2,408	2,603	92.51%	

(단위 : 원)

증여방법 구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비고
	특례 적용	일반(사업무관자산분)	
과세표준	-	579,798,150	
세율	10%	30%	
산출세액	-	113,939,445	
신고세액공제(3%)	-	(3,418,183)	
납부세액	-	110,521,262	

(\*) 장남에게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2018년 4월에 회사의 지분 40%를 일반증여의 방식으로 사전증여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3억 원이 과거 증여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은 특례대상 증여재산이 아닌 일반(사업무관자산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습니다.

- 이어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증여로 부친의 지분을 장남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356,500,000	
사전증여재산	300,000,000	
증여공제	(50,000,000)	
과세표준	606,500,000	
세율	30%	
산출세액	121,950,000	
신고세액공제(3%)	(3,658,500)	
납부세액	118,291,500	

-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와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 미적용
증여세	110,521,261	118,291,500

- 검토 결과 귀사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무려 92.5%에 해당하므로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불과 7.5%에 해당하는 주식가액(26.7백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없고 나머지 주식가액(329.8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및 일반 증여세율(10~50%)이 적용되어 해당 특례의 적용유무에 따른 총부담세액의 차이가 약 7천만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사업구조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Interview 결과 확인되는 바, 과거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한 시점부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28년 4월 이후 일반증여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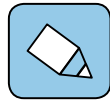
- 이렇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크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약 92.51%로 높게 계산되고 있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을 해당 비율만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즉,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한 주식가액에 (1-92.51%)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검토대상회사의 실질적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비율은 약 7.49%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 4

당사는 약 26년 동안 도소매업 및 유통업을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의 형태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전증여를 위해 법인전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자녀들 앞으로 법인전환 후 가업 승계를 하여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제도를 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아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사전증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개인사업자의 증여세 과세특례


우선 우리나라의 세법상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재산세과-1556, 2009.07.27. 외 다수),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법인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전환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335, 2012.09.20. 외 다수).

• 법인전환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동 자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한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인전환 할 때 과세하지 않고 그 법인이 동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함께 법인전환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환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거나 전환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양수도를 하여야 합니다.
- ② 법인전환으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당사는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약 1,000평 부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3년도 8월 중 백년가게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열과 성을 다해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현재 장남인 저에게 가업을 승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사전 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전 증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업승계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eyword 개인사업자의 승계



우선 우리나라의 세법상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이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증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업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금액을 납부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6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이는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도입된 제도로서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가업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가업승계에 관련된 세제지원제도 중 회사에서 요청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 활용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sup>5</sup>.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재산세과-1556, 2009.07.27. 외 다수),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재산세과-412, 2010.06.21. 외 다수), 이미 10년 이상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으로 영위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법인전환 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sup>6</sup>.
  -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sup>7</sup>,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세

<sup>5</sup> 본 검토에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simulation 결과 이자상당액 부담 등에 의해 세 부담 최소화에 부합하지 않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및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sup>6</sup>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과세당국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서면-2015-상속증여-2127[상속증여세과-01200], 2015.11.16.)’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추후 법인전환의 업무수행시 주의를 요합니다.

<sup>7</sup>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sup>8</sup>.

-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법인전환을 하지 않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각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가업규모 및 업종 요건 : 별표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함(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 해당사항 없음)
- ②-1 가업경영기간 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23년 8월 백년가계로 선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모친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됨
- ②-2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일 것 : 이 요건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건으로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함. 검토대상회사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번에 적용받으려는 가업상속공제가 1차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
- ③-1 피상속인요건 중 최대주주지분 요건 : 검토대상회사는 개인사업체로서 해당사항 없음
- ③-2 피상속인요건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모친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재직 중에 있어 전체 가업기간의 100%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였음
- ④ 상속인 요건 : 상속인(자녀)은 검토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나, 검토대상회사가 아닌 (주)××에 재직 중에 있어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는 못하고 있음. 하지만, (주)××에서 청년 소규모 창업 프로젝트 형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Interview하였으며<sup>9</sup>,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 출근 또는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하는 등 사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해야 할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일부는 충족하였고 상속인 요건의 경우에는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에 해당하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 여기서 사업용 자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및 제11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라고 해석(재산세과-705, 2010.09.17. 외 다수)하고 있습니다.<sup>10</sup>

- 또한 동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 ①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③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④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8 이에 따라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게 되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9 현재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가업종사 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10 현재 조세심판원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 자산으로 한정하되 바 없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에 해당'(조심 2012서626, 2012.06.19.)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의류제조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서도 지방에서 요식업(개인사업자)을 오래 하셨는데 추후 서울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변경한 다음에 부모님께서 영위하는 요식업을 이 법인이 가업을 사전증여의 형태로 승계받으려고 생각 중인데 가능한가요?

**Keyword** 수증자의 사업체 법인전환 후 증여자의 사업 승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현재 가업승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무 프로그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 제1항의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질의하신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즉, 현행법상 법인만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사전요건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법인전환 후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하여 증여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의 경영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와는 달리 질의하신 내용처럼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질의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부모님이 영위하는 요식업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법인이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35년 정도 된 법인의 사업자 대표님과, 차남으로 근무한지 5년 정도 된 가업승계자의 주식 증여에 관한 세무 관계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당사는 얼마 전 증자를 통해 일부 외부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 주식가치를 시가로 보아 증여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Keyword**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주식 등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 여기서 ‘가업자산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등이 존재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어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right)$$

-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기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명백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존의 주주 등이 모두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되거나 회사의 발행주식 일부를 외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등 유상증자를 할 때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관계없이,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검토대상법인의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 더불어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DCF), 배당평가모형 및 초과이익모형(RIM) 등 여러 가지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처럼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검토대상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비록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위 사례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사건이 발생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에 따른 주식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적정한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저는 권○○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1981년 설립 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제가 회사 지분의 67.3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아니라 2017년에 선대께서 사망하실 때 물려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70이 되어 해당 지분을 올해 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상속받는지 10년이 안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Keyword**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면 부친께서 1981년도에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계속하여 경영하던 회사를 2017년 부친께서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권○○님이 가업을 승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약 7년이 지난 후 자녀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증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중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가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합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함
- ②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
- ③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여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④ 종전에 최대주주 등 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함

-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말하는 가업(家業)은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가업의 경영자로서 지위의 승계와 해당 가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의 주식의 승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더불어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증여일 전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계산 역시 이러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체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그 사업자의 자산임과 동시에 가업승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나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없지만,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의 소유구조가 확정되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와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주식의 증여에 의하여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이 자녀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가업의 영위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매우 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 이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해당 상속받은 주식을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검토기준일 현재 어떠한 해석도 내리고 있지 않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와 병렬적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2021년 12월 21일 이후)하여 상속인인 자에게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단기 재산속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 계산 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의 ‘가업’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업을 승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수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질의 및 회신 잘 받았습니다. 관련된 적용 요건 중 추가 질의가 있어 내용 기재하오니, 확인하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조항을 보면 10년, 20년, 30년으로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23년 가업을 경영하다가, 2년 쉬고 다시 7년의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 30년 공제(23+7=30)를 해주느냐, 아니면 20년 이상(23년) 공제를 적용받는지 관련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검토시 가업영위기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주식 등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이때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대상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7년 6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는 2002년 7월 12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2002년 7월 16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회사 주식의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 검토기준일 현재 대표이사인 甲은 2001년 1월 1일(회사와의 Interview 결과 논의의 편의상 甲이 검토대상회사를 2001년 1월 1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에 회사의 지분을 상속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5년부터 약 2년간 대표이사직을 동생으로 변경한 후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회사와의 Interview 결과 동생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기간에도 甲은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업의 운영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여기서 쟁점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할 때 “경영”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증여받은 주식 등 가액의 과세특례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만을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 증여받는 주식 등의 가액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 외에도 회의록, 결재과정,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증빙 등에 의해 그 기업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검토대상회사와 같은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상장법인은 2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하며,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반드시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할 때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재산세과-432, 2011.09.20.).
- 정리하자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 한도액인 600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인 상태로 30년 이상을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꼭 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다는 의미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서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로 甲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검토기준일까지 검토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 후에는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은 물론<sup>11</sup> 해당 기간 중 실제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 않는 점, 회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검토대상회사를 甲이 2001년에 상속받아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2024년 말까지 계속하여 최대주주이면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로 가업을 경영하다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대표이사를 동생으로 잠시 변경한 후 2027년부터 다시 甲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할 예정이며, 동생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해당 기간에도 甲은 회사의 회장 등 직함을 가지고 그 기업의 경영에 실제로 계속하여 참여할 계획인 점 등으로 보아 甲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모든 가업의 영위기간을 합하여 증여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가업승계 주식의 과세특례 한도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여자가 23년 가업을 경영하다가, 2년 쉬고 다시 7년의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증여자인 甲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인 600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11</sup>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경우 주식보유요건은 비상장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40%, 상장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2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며, 검토대상회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Interview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 지분 60% 이내 지분 40% 이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에 올려 법인기업인 서점을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을 구합니다.

1. 창업 8년 경과 후 제가 사망하여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거쳐 아내 지분 70%, 큰아들 15% 작은아들 15%가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가능지분이 40%와 70% 중 어느 쪽인지와 과세특례가능시점이 2년 후인지 상속절차 완료 후 10년 경과 후인지 궁금합니다.
2. 창업 9년 경과 후 아내가 일반적인 증여절차를 거쳐 자신의 지분을 전부 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가능지분이 60%와 100% 중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및 취득 10년 미만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의 주식(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 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영위)
- 다.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2인 이상 가업승계도 가능)

- 이 중 ‘나’의 증여자 요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질의에서 쟁점 역시 증여자 요건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회사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하는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의 지분구조가 신청인(이하 ‘甲’이라고 합니다)이 60%, 배우자(이하 ‘乙’이라고 합니다)가 40%인 상태에서 甲의 사망(이하에서 ‘1차 상속’이라고 합니다)하여 乙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지분을 증여할 때에는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1차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乙의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업영위기간의 계산할 때 기산일은 당초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를 설립한 후부터 甲과 乙이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서 8년 이상 경영한 후에 甲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甲의 지분을 배우자인 乙 및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이때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야 하는 가업의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甲의 지분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배우자인 乙의 지분율이 70%가 된 경우로서 향후 해당 지분 70%를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甲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닌 검토대상회사의 설립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기타의 사전요건을 충족한다면 70%의 지분 모두에 대하여 동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가업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자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 등의 4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甲이 60%, 乙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따라 회사설립일부터 검토기준일 현재까지 甲과 乙의 지분율을 합하면 100%로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2년 1월 5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본 해석입니다.

- 두 번째 질의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는 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귀 법인 설립 및 창업 후부터 甲이 최대주주로서 9년 이상 경영한 후에 배우자인 乙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 甲의 지분 100%(당초 소유 및 증여지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인 가업요건 및 증여자, 수증자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당사는 1964년에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당사의 지분구조는 제가 10%, 배우자 20%, 나머지 지분은 자녀 2명이 각각 45%와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하는 것을 듣기로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이 제일 많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지분과 배우자 지분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eyword** 증여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이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합니다.

-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2)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3)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여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4) 종전에 최대주주 등 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표 중 ‘(3) 주식보유요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여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sup>12</sup>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이 경우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자녀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재산세과-3185, 2008.10.08.),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는 경우 및 4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업에 모두 종사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배우자에게 순차적으로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 즉 각각 10% 또는 20%의 지분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라고 하여 대표이사의 지분 10%를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가 잔여 지분 20%를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자인 대표이사 본인에게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인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등<sup>13</sup> 별도 정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업승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경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가 질의하신 바와 같다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본인의 보유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지분 10%(증여 전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 또는 양수도 등 방식으로 이전하였다면 추후 취득한 20%를 합하여 30%)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여자의 지분이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인 사실관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회사의 지분을 평가한 결과 1주당 주식가치는 40,908원이며, 이에 따라 배우자의 보유지분 8,000주(20%)를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27,264,000원에 불과하여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simulation되었습니다.

12

당사는 20년 된 중소기업사로서 공동대표로 어머니와 또 다른 대주주인 하○○ 2명이 등재되어 있고 저는 회사의 직원이자 어머니의 딸입니다. 회사의 주식은 어머니께서 41%, 제가 9%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이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때 조건 중 증여자가 최대주주이고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머니께서 최대주주가 아닌데 제가 증여세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머니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신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Keyword**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의미, 공동대표이사의 증여자 요건 충족 여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은 제30조의6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②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기본세율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60세 이상의 부모, 10년 이상 가업 영위)  
다.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2인 이상 가업승계도 가능)

- 질문하신 내용은 이 중 ‘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하에서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증여자가 가업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해당 주주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모두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장녀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또한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장녀의 지분과 공동대표이사인 하○○의 지분이 각각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재산세과-710, 2009.04.08.)”이라고 해석하여 공동경영자 2인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까지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각각의 자녀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과 더불어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위와 같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의 가업승계를 할 때 1회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 즉, 공동대표이사인 어머니 및 하○○이 주식을 공동소유하고 공동 경영하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하○○이 먼저 검토대상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어머니의 보유지분을 장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더불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로는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이어야 하며, 여기서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후 20년간 어머니께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가업을 경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여러 가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였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하신 공동대표이사 재직여부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당사는 충청남도에서 광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32년을 대표이사로 근무하신 후 2017년 8월 중 회사의 지분 5만주 중 32,139주(35.71%)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연령이 고령이라 사전증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취득한지 10년이 안 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eyword** 최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추가 취득하여 10년이 안 된 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요건 중 최대주주 지분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합니다)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업력에 따라 최대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완화한 제도를 말하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등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미종사 또는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중 “최대주주 주식보유 요건”으로 증여자가 가업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기준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주주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이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였다고 하여 취득한지 10년이 안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와 같은 법문헌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 ③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요건 중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인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명	관계	직급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권○○(가명)	본인	회장	50,000	55.56%	2017.8.11. 취득 <sup>14</sup>
권◇◇(가명)	장남	대표이사	10,000	11.11%	2017.8.11. 취득
권□□(가명)	장녀	감사	20,000	22.22%	2017.8.11. 취득
권△△(가명)	차남	사내이사	10,000	11.11%	2017.8.11. 취득
합계			90,000	100.0%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례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인 권○○님이 지분의 추가취득일인 2017년 8월 11일 현재 최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권○○님과 권○○님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질의자가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과거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던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그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검토기준일 현재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1.)”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 이는 단지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sup>14</sup>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님의 경우 2017년 8월 11일 이전에는 17,861주(19.85%)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8월 11일에 32,139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기타 자녀들의 주식 역시 해당일에 취득하였음이 회사의 주주명부 및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당사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가업승계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나, 회사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가업승계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본 중소기업중앙회에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전증여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의 지분구조에서 사전증여를 할 때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yword** 부모 지분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검토결과 검토대상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업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인 아들(이하 '이□□'라고 합니다)이 현재 팀장으로서 근무 중에 있어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승계대상지분의 대략적인 가치는 부친 16억원, 모친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계대상 회사의 주식보유내역과 가치]

구분	주식수	금액(원)	주식보유비율	비고
이○○(가명)	3,000주	약 16억원	60.00%	본인
박○○(가명)	1,900주	약 10억원	38.00%	배우자
이□□(가명)	100주	약 0.5억원	2.00%	장남
계	5,000주	26.5억원	100.00%	

- 이에 대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승계플랜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하 차례로 봅니다.
- 먼저, 질의하신 방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이하 '이○○'이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이하 '박○○'라고 합니다)도 회사의 지분 38%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후 계속하여 임원(사내이사)으로서 가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 지분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들 수 있으며 가능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상속증여세과-00348, 2016.03.30.)'이라고 하여 父母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해 불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어 이○○의 지분 뿐 아니라 검토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의 지분까지도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자녀인 이□□에게 증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에 대해 "父와 母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母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4361, 2022.06.29.)"라고 명확히 해석함에 따라 종전에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1차 과세특례)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가 다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2차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이○○과 박○○의 지분 중 보유지분이 많은 이○○의 지분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박○○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배우자인 박○○의 지분을 이○○에게 모두 이전한 후 자녀인 이□□에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는 배우자 박○○의 주식 1,900주를 이○○에게 증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함에 의한 것으로, 이유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가업상속공제까지 고려해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에게 모든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까지 수증자에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검토기준일 현재 약 10억원 배우자의 지분을 이전할 때 발생할 증여세액은 67.9백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증여세액 218.25백만원보다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의 지분이 2차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박○○의 지분을 이○○에게 이전하지 않게 되어 이○○의 상속이 개시된 후 박○○이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를 하지 않은 박○○의 지분 38%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제거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박○○의 지분을 이○○이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후 동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으로 해석함에 따라 배우자인 박○○의 주식을 이○○에게 이전한 후 과거와 같이 10년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수행을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1999년에 설립 후 2022년 6월 30일에 회사를 분할하였으며 업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님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지분은 대표이사인 제가 45.87%, 저와 공동대표이사인 장남이 20%, 감사인 배우자가 14.13%, 분할존속법인이 나머지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저와 처(妻)의 지분 모두를 사전증여의 방식으로 장남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증여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상담자문 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부(父)와 모(母)가 함께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업력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요청하신 검토대상회사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 검토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가업상속공제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토기준일 현재 증여자(甲과 乙)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각각 60세 이상의 부모(父母)에 해당합니다.
- ③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예정자인 수증자(장남)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에 해당하며 2022년 6월 30일부터 사내이사에 등재되어 있으며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④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부(父)와 감사의 직책을 맡아 경리업무 일체를 책임지고 있는

모(母)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를 10년 이상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분할계약서 등 제서류로 확인되었습니다.<sup>15</sup>

⑤ 최대주주 등이 검토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보유여부 : 검토대상 회사의 검토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검토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00%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검토기준일 현재 본인(甲, 공동대표이사) : 45.87%, 배우자(乙, 감사) : 14.13%, 자녀(丙, 공동대표이사) : 20% 등).

• 검토 결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하며, 검토대상회사는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는 별개로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인 본인(甲)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乙)이 회사의 지분 14.13%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후 계속하여 감사 등으로서 가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乙의 지분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들 수 있으며 가능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상속증여세과-00348, 2016.03.30.외 다수)’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甲의 지분 뿐 아니라 검토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乙의 지분까지도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자녀인 丙에게 증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2022년 6월 29일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이라고 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부모의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검토대상회사를 경영한 부(甲)와 모(乙)의 지분 중 甲(또는 乙)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면 이후 乙(또는 甲)의 지분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배우자간 증여,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 중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상대적으로 보유지분이 적은 乙의 지분을 甲에게 이전한 후 전체 보유지분 60%를 장남에게 증여하는 등 별도의 지분정리 후 승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가업승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경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up>16</sup>

<sup>15</sup> 해당 사례의 경우 분할 전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 일자로 제조업 부문 중 경상북도 영천소재 가공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인 검토대상회사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16</sup>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증여세 결정·경정분부터는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모의 주식을 부에게 이전한 후 과거와 같이 10년 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부부간 지분을 증여한 후 바로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할아버지께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할아버지께서는 대표이사인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녀인 제게 지분을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녀로의 가업승계세제혜택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안된다면 할아버지의 지분을 대표이사인 아버지에게 승계하고 싶으나 할아버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Keyword** 손자(녀)에게 지분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고자 2007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합니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 또는 모를 포함합니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업력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부모님(조부의 자녀)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질의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로부터 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조부께서 손녀가 아닌 자녀인 질의자의 부친(검토기준일 현재 대표이사)에게 지분을 증여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질의자의 조부는 법인설립시부터 한번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으나 대신에 검토기준일 현재까지 검토대상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0년 말까지 회사의 대주주로서 직접 가업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검토기준일까지 형식적으로는 검토대상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이 급여지급내역, 회사 관계자와의 Interview 등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질의자의 조부(이하 ‘증여자’라 합니다)와 같이 대표이사로는 재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이어야 하며, 여기서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가업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과거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상속증여-2304, 2022.07.04., 재조세법령운용-571, 2022.05.30.)”라고 회신함으로써 질의와 같이 증여자가 검토대상회사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 오다가 나이,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저는 1988년 10월에 개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A)과 이후 2006년 6월에 개업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B)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어 차근차근 자녀에게 승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방법은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사의 경우 제가 82.54%, B사의 경우에는 99.5%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제 지분을 A사는 장남에게, B사는 차남에게 각각 배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오늘 동시에 자녀에게 두 회사의 지분을 이전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 경우 대략적인 조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기업의 주식(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질의하신 검토대상회사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 양사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가업상속공제대상인 제조업(A사) 및 물류업(B사)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②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할 것 : 양 사 모두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각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
- ③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토기준일 현재 증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父)에 해당함
- ④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예정자인 수증자(장남 및 차남)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에 해당함
- ⑤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양사 모두 설립일인 1988년 10월, 2006년 6월 사업 개시 후 계속해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함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증여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 지분을 자녀 1인이 아닌 장남 및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에서 검토한 사전요건 중 '수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기준일 현재 가업을 승계할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 두 개의 승계대상 회사의 지분을 각각 장남 및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sup>17</sup>. 참고로 검토기준일 현재 증여자가 수증자인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할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	증여주식 수	1주당 주식가치	증여재산가액
장남	780,000주	약 18,820원	14,679,600,000원
차남	10,348주	약 960,000원	9,934,080,000원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에 장남과 차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곧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즉, '동시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으로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장남	차남	
증여재산가액	24,613,680,000		
과세특례공제	(1,000,000,000)		과거 증여사실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23,613,680,000		
한계세율	20%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증여세 산출세액	3,522,736,000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각 거주자 납부세액	(*)2,100,959,929	(**)1,421,776,071	

(\*) 장남이 납부할 증여세액 : 3,522,736,000×14,679,600,000/24,613,680,000 = 2,100,959,929원  
 (\*\*) 차남이 납부할 증여세액 : 3,522,736,000×9,934,080,000/24,613,680,000 = 1,421,776,071원

17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인 이상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과거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무차별하도록 계산방법을 설계한 것입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증여를 2명 이상의 자녀에게 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증여 받은 모든 자녀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지
2. 한도 내에서 주식을 100% 다 증여해야 하는지, 일부만 증여해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Keyword** 2명 이상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2007년 12월 31일 신설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합니다)’제도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업력에 따라 차등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②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기본세율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 ②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가업 영위)
- ③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2인 이상 가업승계도 가능)

- 이 중 수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③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
- ④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도 가능함

• 한편,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 즉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②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가업승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2008년에 해당 규정을 만들 때 가업승계 요건에 일정기간 가업종사기간을 부여하고 5년(현재 법 개정으로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완전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모두에 언급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경영수업이 필요하므로 3년의 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증자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일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추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증여자가 위에서 언급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특례를 적용받은 2자녀 모두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모두 취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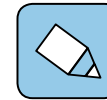
•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특례제도이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증여자가 소유한 검토대상회사의 주식을 전부(100%) 증여해야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동 특례제도의 적용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증여한 경우에도 이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

우리 회사는 성남시에서 페인트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에게는 딸만 셋이 있는데 딸들 모두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데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하는데 이 경우 주식을 딸이 아닌 사위에게 증여해야 사전 증여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Keyword** 수증자 요건 중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주식의 수증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중 수증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함
-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여야 함
- ③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
- ④ 2인 이상이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도 가능함

• 이렇듯 수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기업을 승계한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2015년 2월 3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의 배우자(증여자의 사위, 며느리)가 위에서 설명한 수증자 요건 중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 '③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증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기업을 승계한 경우'를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말 그대로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지분까지 수증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이어야 함이 문헌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질의하신 대표이사님의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 배우자, 즉 사위가 가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위가 위에서 언급한 ‘수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족하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지분까지도 사위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딸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사실관계가 동 특례의 적용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저희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의 법인입니다. 2022년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100억에 대하여 5억원 공제 후 30억에 대하여 10%, 65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한도·공제액 확대 및 저율과세 한도가 확대된 2024년에 추가로 60억을 증여받을 경우 확대된 사항들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① 확대된 300억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② 기존에 기본공제를 5억 받았으므로, 2024년 증여세 과세특례시 추가로 5억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③ 저율과세 한도 계산시 기존에 30억에 대해서만 10%를 받았는데 저율과세 한도가 120억으로 확대되었으니 추가 60억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가업재산의 재차 증여시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개정법률 적용 여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100억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은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시가액}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 즉,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업력의 고려없이 일괄하여 100억원을 한도로 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금액을 증여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종전에는 과세표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검토대상회사가 2022년에 기업주식을 증여한 후 두 번의 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아래에서 개정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한도, 공제액 및 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19199호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한도, 공제액 및 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자의 기업영위기간에 따른 증여의 한도액을 기업상속공제의 한도와 동일하게 업력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공제한도		
	종전	개정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억원	증여자의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2)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 및 세율 적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구분	종전	개정
	공제액	5억원	10억원
세율	낮은 세율(10%)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높은 세율(2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60억원 초과

- 여기에 더하여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19936호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저율과세 구간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기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6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낮은 세율의 과세구간 적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구분	종전	개정
세율	낮은 세율(10%)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높은 세율(20%)	과세표준 60억원 초과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된 세법규정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법률 제19199호)과 2023년 12월 31일 개정규정(법률 제19936호)의 적용에 대해 법률의 본문에 규정되지 않은 시행일, 경과 규정, 적용례 등을 명시하는 조항인 해당 법률에 대한 부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법률 제19199호에 대한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2022년에 100억원의 기업자산상당액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후 2024년에 추가로 60억을 증여받게 될 경우에는 확대된 한도(업력에 따라 300억원~600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2022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였으므로, 2024년 추가로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개정된 증여재산공제액인 10억원에서 이미 공제한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을 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된 세율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19936호에 대한 부칙 제38조(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세율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2022년에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기업의 주식 100억원 대해서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2024년에 추가로 증여하고자 하는 60억원의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는 60억원 중 30억원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높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가업승계주식 등 중 해당 증여재산(A)	6,000,000,000	
가업승계주식 등 중 가산 증여재산(B)	10,000,000,000	
증여세 과세가액(A+B=C)	16,000,000,000	
증여재산공제	(1,00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	15,000,000,000	
한계세율	20%	
산출세액	2,500,000,000	(*)
납부세액공제	(1,600,000,000)	(**)
차감납부할세액	900,000,000	

(\*) 2022년에 증여받은 재산 즉, 위 '가업승계주식 등 중 가산 증여재산(B)'인 100억원에 대한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계산한 16억원에 '가업승계주식 등 중 해당 증여재산(A)'인 60억원에 대해서 개정 후 규정에 따라 30억원에 대해서는 10%, 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9억원을 더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이는 2022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2022년 시행 법률에 따른 공제액인 5억원 및 세율(과세표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10%와 20%의 2단계 누진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1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사후관리 기산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식 증여일 기준인지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일 기준인지?

2.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 최근 대분류내 업종변경을 가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는데, 소급해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창업부터 10년간 중분류 23번 업종영위, 2010~현재까지 중분류 24번 업종 영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600억을 적용받는지? 10년에 해당하는 300억을 적용받는지요?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산일과 가업영위기간의 산정 방법



기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게 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하에서는 질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기산일에 대하여 차례로 봅니다.

-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산일

기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① 또는 ②).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 '나.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산일

기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가업에 종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 이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수증자가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사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산일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이때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범위와 예외사항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지만 위의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중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하 '가업승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라 합니다)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가업승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2008년 해당 규정을 신설할 때 가업승계 요건에 일정기간 가업종사기간을 부여하고 5년 내(현재는 3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완전히 승계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 즉, 일반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경영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업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일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사후관리에서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22년 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나목을 개정하여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은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합니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32414호, 2022.2.15.)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제5조에서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해당 규정이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하 생략)"라고 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경영기간 중 업종유지 의무를 판단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대상회사가 "창업부터 2010년까지 중분류 23번 업종영위, 2010~현재까지 중분류 24번 업종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즉, 중분류간)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하게 되므로 검토대상회사는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600억원의 증여받는 주식 등 가액의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부여받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2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향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기업재산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개시 후 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업력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입니다.
-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sup>18</sup> 따라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납부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상속시점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며,

공제 후에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기업(최대주주 등 지분을 40% 이상, 상장기업은 20%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기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sup>18</sup>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제28조 ①). 다만,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면제제도가 아니라 사전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상속세의 선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합산기간(10년)에도 불구하고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당사는 대주주인 아버지께서 1994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버지께서 세법에서 사전증여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전증여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정말 세금부담 없이 증여를 받아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더 이상 승계한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는 건가요?

**Keyword**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이월과세 적용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입니다.
-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sup>19</sup> 따라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납부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상속시점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최대주주 등 지분율 40% 이상, 상장기업은 20%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더불어, 종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만 종료되면 상속받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실제로 세금 면제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이 과세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의 면제효과는 사라지고 일종의 이연효과만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이월과세를 적용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할 때에는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상속시점의 납부세액은 현저히 줄어들어 원활하고 계획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가업재산을 처분하여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에 대해서는 세액의 이연효과에 불과하여 전체 주기(상속시점부터 상속 후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총부담세액의 면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19</sup>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제28조 ①). 다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면제제도가 아니라 사전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상속세의 선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합산기간(10년)에도 불구하고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증여자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로 변경되는 건가요? 가업상속공제로 변경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냈던 세금은 돌려주나요? 주식금액이 60억이라고 치면 5억(10억 공제의 10%)을 세금으로 낸 건데 가업상속공제는 100%공제니 5억 손해보는 것 아닌지요?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납부한 세액의 상속세액 계산시 처리방법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에 따른 가업(최대주주 등 지분율 40%, 상장은 20%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이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

• 더불어 이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sup>20</sup>에도 불구하고

20 이에 따르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그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게 됩니다.

-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질의하신 바와 같이 60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액 5억원을 납부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다음의 사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억원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례2〉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단위 : 원)

구분	〈사례1〉	〈사례2〉	비고
가업상속재산가액(A)	6,000,000,000	6,000,000,000	(*)
이외의 상속재산가액(B)	1,000,000,000	3,000,000,000	
상속세 과세가액(A+B=C)	7,000,000,000	9,000,000,000	
가업상속공제(적용시 : A×100%)	(6,000,000,000)	(6,000,000,000)	(**)
이외의 상속공제	(1,000,000,000)	(1,000,000,000)	(***)
상속세 과세표준	-	2,000,000,000	
한계세율	0%	40%	
산출세액	-	640,000,000	
증여세액공제	-	(500,000,000)	(***)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3%)	-	(4,200,000)	
차감납부할세액	-	135,800,000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므로 가업상속재산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60억원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액을 공제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의 합계액인 1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액은 각각 사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1〉 :  $\text{Min}(0, 5\text{억원}) = 0\text{원}$

② 〈사례2〉 :  $\text{Min}(6.4\text{억원}, 5\text{억원}) = 5\text{억원}$

- 결과를 보면 〈사례1〉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억원을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사례2〉의 경우 5억원 전액을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납부한 5억원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례1〉의 경우 가산한 가업승계 주식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가액을 합한 후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0%로 증여세 과세특례시 적용받은 특례세율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사례2>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0%로 특례세율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억원을 전액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게 되나, 해당 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액 돌려받을 수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한 경우에는 10년 경과 여부 즉,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산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에 주식평가액이 감소되더라도 증여시점의 평가액을 가산하는 점, 상속세의 세율이 최고 50%라는 점,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재산가액의 100%로 확대된 점, 상속세액 계산시 증여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따른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액 차이 및 증여세 사전납부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사례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바, 동 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수행시기 및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

- 현재의 주식평가액은 낮으나 향후의 주식평가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가업해당 주식 증여 후 수년 내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한계세율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10% 또는 20%) 보다 큰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것이 일반적으로 불리한 경우

- 향후의 주식평가액이 현재의 주식평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 현재의 주식평가액은 낮으나 향후의 주식평가액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가업해당 주식 증여 후 상당기간 후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기타의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등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한계세율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10% 또는 20%) 보다 작은 경우

당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으로 승계 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인적분할 전 회사의 주업종은 물류업(부동산개발업 겸업)이었으나 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개발업, 분할신설법인의 주업종은 물류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려되어 이리 질문드립니다.

**Keyword**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로 인한 업종변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기본세율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만,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 ②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 ③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이 중 ‘②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가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가업에 종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대상회사(이하 “A법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하 “B법인”)이 설립되고 B법인은 분할전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회사는 인적분할 전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분할전·후 최대주주 요건과 지분을 변동은 없으나, 분할법인인 A법인의 주업종이 분할전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이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하기 전의 주업종이 아닌 겸업하고 있던 기타의 업종을 영위할 때 사후관리 위반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현재 5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현재는 대분류)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2565, 2016.09.29.)”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이 분할전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2023년 회사를 분할한 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이드릴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로 인해 새로 생긴 법인 주식의 보유시기를 제가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 시점부터 10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카운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Keyword**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



증여자가 가업의 최대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합니다)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20%) 이상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이 경우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위와 같은 주식보유 요건은 증여일 전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대상회사(분할신설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가명)은 회사를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 왔고 박○○과 그 특수관계자가 분할 전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2023년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중 제조업 부문이 인적분할되면서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검토기준일 현재도 변함없이 검토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요건 중 증여자 등이 검토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이며 이에 대해 현재 과세당국의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가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이라고 하면서,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검토기준일 현재 법령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재산세과-613, 2011.12.26.)”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 이는 법인전환 및 인적분할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인격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의 업종,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분할 전의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주식보유기간 또는 10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해석으로, 이를 미루어 볼 때 검토대상회사는 법인설립시점인 1999년부터 인적분할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법인 분할 전에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이 제조업으로 이러한 가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된 점, 법인설립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증여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분할 후에도 검토기준일까지 분할신설법인인 검토대상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분할 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을 분할하여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분할 전 기간과 분할 후 기간 모두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자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사전답변 법규재산 2013-432, 2014.01.22.) 현재 과세당국에서 이에 대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상속증여-3997, 2022.09.29.), 검토대상회사의 주식보유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냉난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저는 2012년 5월 1일 회사에 입사하여 가업에 종사하던 중 2022년 9월 26일 아버지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서 아버지 지분 중 일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73백만원 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추후에 살펴보니 증여한 주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같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 구제방법이 세법에 존재하는지요?

**Keyword**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사후 구제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의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혜택 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5 제12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 또는 요건충족여부에 대해 잘못 판정함으로써 동 법령의 절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신고·납부한 후, 추후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상속증여-1848, 2017.07.28.),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이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증여자인 부친이 본인의 보유지분 전체를 수증자인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검토대상회사의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아버지께서 추후 검토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유무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증여를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말 결산 이후 딸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모르고 일반 증여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률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 여부



현재 세법상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300억원~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②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기본세율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중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증여건에 대해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라고 하여 과세표준과 특례세율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일반신고서식이 아닌 별도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와 함께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9월 30일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는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내에 ‘기업상속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기업상속재산 명세서
  - 기업용 자산 명세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기업의 경우)
  -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법인 기업의 경우)
  - 기타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2020년 80억 증여세 과세특례 후 30억은 10%, 50억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20억 발생하였는데(60억 10%, 60억 초과 20%) 이 20억은 10% 세율을 적용받는지, 20% 세율을 적용받는지요?  
즉,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 등에 대하여 당초 최초 증여가 이루어진 종전의 법에 따르지 또는 상장으로 이익이 발생한 때의 법에 따르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Keyword**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장 등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항(직계존속 5천만원) 및 같은 법 제56조(증여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19936호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2020년 증여재산 8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3년도에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해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시기가 중요하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시기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인지 또는 정산기준일<sup>21</sup>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해당 증여규정은 상장일에 새롭게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던 것을 유보하였다가 실제 시장 주식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과세 또는 환급하는 등으로 정산한다는 취지로 각종 규정을 구성하고 있는 점, ② 정산기준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정산기준일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 등을 한 최대주주 등이 사망한 경우 증여세가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권 이전 등이 전혀 없는 날에 환급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기는 점, ③ 정산기준일이 증여시기라면 정산신고기한을 굳이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 하고 정산기준일만을 상장 등을 한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대법원 2015두3096, 2017.09.26.)”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주식의 증여시기는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때가 아닌 해당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202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120억원이 아닌 3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세율인 20%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21</sup>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

당사는 1999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금번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제가 가진 주식 중 1만주를 증여한 후 상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을 증여한 다음 한참 있다가 상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요?

**Keyword**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최대주주'라고 합니다)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장 전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 ② 증여일·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이 상장될 것
- ③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sup>22</sup>
- ④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수증자)이 이익을 얻을 것

•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 즉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sup>23</sup>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sup>22</sup>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② 3억원

<sup>23</sup> '정산기준일'이라 함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검토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검토대상회사의 대주주인 강○○(가명)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중 장남에게 15,000주를 증여한 후 계획대로 내년 7월 1일에 상장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 : 1주당 150,000원
- 2024년 각 사업연도 순이익액의 추정액 : 1주당 225,000원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도결산시 순이익액의 추정액 : 1주당 45,000원
- 정산기준일 1주당 가액의 추정액 : 750,000원

① 비상장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평균 순이익의 증가분 계산(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함)

$$\frac{225,000\text{원}(\text{각 사업연도 순이익액})+45,000\text{원}(\text{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도결산})}{18\text{개월}}$$

$$= 270,000\text{원} \div 18\text{월} = 15,000\text{원}(\text{1주당 월평균 순이익가치 증가분})$$

② 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 : 15,000 × 15월 = 225,000원

③ 증여재산가액 = [750,000원(정산기준일 1주당 가액)-150,000원(1주당 증여가액)-225,000원(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15,000주=5,625,000,000원

• 이처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말함)이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향후 상장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상장이익을 제외하고도 강○○ 대표이사님이 증여를 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여 또는 상장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제4장

# 사업무관자산

1

당사는 1974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을 위한 지구본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부친의 연세가 80세가 넘어감에 따라 현재 가업의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만기 3개월짜리 외화예금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화예금도 전부 영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추후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Keyword** 과다보유현금, 외화예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사업자)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사업자)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 중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sup>1</sup>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frac{\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가업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업과 관련 없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이므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지만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실무상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sup>1</sup> 이는 단순히 법인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제4장.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 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이러한 사업무관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가업상속 공제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사업형태별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금전대부업, 지주회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은 가업상속 재산 공제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위 “④”에서 설명한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외화금융상품은 위 “⑤”에서 설명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검토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짜리인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과다보유현금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준금액은 상속개시일 직전 5개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로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다보유현금액”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다보유현금 : ①-(②×150%)=2.5억원

- ①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성자산(현금+요구불예금+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 14.5억원
- 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현금성자산(현금+요구불예금+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 (10억+10억+0억+10억+10억)÷5년=8억원



2

부친께서 속환이 있어 미리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업 승계예정자입니다. 세무대리인께서 당사의 재무제표의 자산총액 중 정기에금의 비중이 50%가 넘어 해당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Keyword** 정기에금 및 과다보유현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 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결국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이란 그 법인의 기업가치 그 자체가 아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회사의 가업상속공제율이 100%가 아닌 100%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을 차감한 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begin{array}{l} \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 \text{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end{array}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sup>2</sup>은 약 320억원이며 이중 단기금융상품은 약 146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서면-2018-상속증여-2569, 2018.10.31.)’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질의하신 정기에금 등의 금융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검토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가업상속공제의 비율은 약 54.38%{1-(146억원/320억원)}에 불과할 것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직전에 금융상품을 해지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에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즉 현금성자산은 제외하게 되므로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을 판단할 때 현금에 포함되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또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참고로 검토기준일 현재 정기에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게 될 경우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 및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보유현금 기준금액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	비고
2023년 12월 31일	61	
2022년 12월 31일	54	
2021년 12월 31일	35	
2020년 12월 31일	17	
2019년 12월 31일	28	
계	195	A
과다보유현금 기준금액	58.5	B=(A÷5)×150%

2 검토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세무상 총자산가액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분모의 금액이 커져 질의에서 말씀하신 50%의 비율보다 적게 됩니다.

- 검토기준일 현재 과다보유현금액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고
과다보유현금기준액(A)	58.5	
현금성자산보유액(B)	207	검토기준일 현재
과다보유현금액(C=B-A)	148.5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 등을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직전에 전환하게 되면 현금성자산이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므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무차별하게 될 것인 바,<sup>3</sup>
  - 이와 관련하여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의 경우 2024회계연도부터 매 결산일(컷 오프) 직전 현금성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사업무관자산을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점차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simulation 결과 수년 내 점차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비율이 증가하여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희석되어 2026년 회계연도 이후(2027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과다보유현금액이 “0”원이 됩니다.

3 재계산 후 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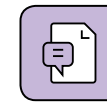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과다보유현금액	세무상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	비고
148.5	320	46.41%	

3

당사는 기업의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요즘 보험모집을 하는 지인의 권유로 대표이사인 저와 임원인 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일명 CEO퇴직연금)의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임직원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 퇴직연금은 3개월 이상의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Keyword** 상속인의 종신보험 및 임직원의 퇴직연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질의하신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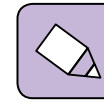
- 이 중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란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채권과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에 따른 금융상품으로서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질의하신 회사가 계약자,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자(모두 기업 종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상해보험) 및 임직원의 퇴직연금(DB)불입액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종신보험 등은 법률상 의무적인 가입조건이 보험이 아니고 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는 달리,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적립액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중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4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대리인과 이야기하다가 가업승계를 할 때 해외현지법인지분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가절감을 위한 수직계열화를 위해 설립하였으므로 사업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Keyword**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결국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이란 그 법인의 기업가치 그 자체가 아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회사의 가업상속공제율이 100%가 아닌 100%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을 차감한 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frac{\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질의하신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대부분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가업과 무관한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자회사주식,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sup>4</sup>

• 하지만,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자회사의 영향력·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서 모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바,

•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07.13. 선고 2018두397136 판결)하였으며, 이에 기인하여 조세심판례에서도 “단기간 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과 달리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진 과세처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2825, 2021.12.09.)라고 하였습니다.

- 즉,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지,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검토대상회사가

원가절감, 즉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 대부분을 매입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점,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까다로워 부득이하게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점, 과거 국내에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현지공장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영업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단지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생산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되어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대를 이어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검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p>4</sup> 과세당국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00699, 2016.06.21. 외 다수)”이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동일업종의 완전 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5

당사는 현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당사를 승계할 때 지분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제가 우리 회사의 지분을 8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증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식가격이 매우 높게 평가될 것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Keyword** 사업무관자산, 최대주주할증평가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사업자)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사업자)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 중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sup>5</sup>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frac{\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가업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업과 관련 없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이므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지만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실무상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up>5</sup> 이는 단순히 법인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제4장.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질의하신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대부분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가업과 무관한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자회사주식,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sup>6</sup>.

- 하지만, 검토대상회사와 같이 자회사의 영향력·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서 모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바,

-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07.13. 선고 2018두397136 판결)하였으며, 이에 기인하여 조세심판례에서도 “단기간 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과 달리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sup>6</sup> 과세당국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00699, 2016.06.21. 외 다수)”이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동일업종의 완전 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진 과세처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2825, 2021.12.09.)라고 하였습니다.

- 즉,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지,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 자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업종, 상호거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검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과거에 세법 개정 전 할증평가대상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지분별로 할증평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해 할증평가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개정 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할증비율	
	일반법인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위의 표와 같이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을 기업규모에 따라서만 차등적용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sup>7</sup>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 등 일정한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할증평가대상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2년 12월 31일 이전	2023년 1월 1일 이후
일반기업	20%	20%
중견기업	20%	0%
중소기업	0%	0%

<sup>7</sup>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30%의 할증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통상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6

당사는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는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이며 비어 있는 공간을 임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용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퇴직금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업무용자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Keyword**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직원에게 대여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문의하신 내용은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업상속재산”이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업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begin{array}{l} \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 \text{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end{array} \times \left(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 위 산식에서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상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 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위 ④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질의하신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중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과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것으로서, 이하 차례로 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업무무관자산을 판단할 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공부상의 용도, 취득 원인이나 보유하게 된 원인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가 검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개시일까지 실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 창고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용도에 관계없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게 되어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0% 이상 해당 부동산을 임대를 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의 임대비율과 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이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원활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처나 관계사, 주주, 임원, 종업원,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으며, 기업회계에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른 자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올바른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여금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참고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적용되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대여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하고 있으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도입취지<sup>8</sup>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대여)한 가지급금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sup>9</sup>.

- 따라서 검토대상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여한 금액은 비록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세법상 대여금의 취급은 차입자가 누구인지 또는 대여목적이 무엇인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취지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2012.02.02.)”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9 이에 대해 현재 과세당국에서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이라고 하여 가지급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7

철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공장 부지(토지)는 이번에 작고하신 부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토지에 있는 공장건물은 법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부친 개인소유 토지는 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부친이 법인에 임차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할 수 있는 건지요? 또한 추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 즉 차명으로 예금한 금전이 있는데 이 금전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Keyword**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하되,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여기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가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일 것
-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일 것
- ③ 종전에 최대주주 등 중 1인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친께서 영위하는 사업은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별표] <개정 2023. 02. 28.>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카.	(생략)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너.	(생략)

- 더불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용 자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과 제11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라고 해석(재산세과-705, 2010.098.17.외 다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개인기업의 기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친명의의 임대용 토지는 아무리 유형자산 등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그 다음 질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

뿐 아니라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이에 대하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부친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어머니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타 수익용 자산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이처럼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해당 사례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하지만, 반대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입·출금 의도 및 예금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액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을(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만 과세) 알려드립니다.

8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피상속인이 2024년 6월에 사망할 경우, 사업무관자산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상속시점에 가결산을 해서 적용하는지, 또는 2024년 12월말까지 결산해서 적용하는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Keyword** 사업무관자산의 산정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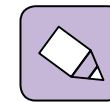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가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귀사와 같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은 모두 상속 개시일 현재 가결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당사는 과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당시의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은 10%였습니다. 최근 부친께서 연로하여 상속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은 30%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에 대해서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될 텐데 그 때 다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되어 불합리한 것 아닌지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Keyword** 특례대상 주식에 대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가업승계 등 가업의 사전상속을 통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서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한 가업법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주식(이하 ‘특례대상 주식’이라고 합니다)과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하 ‘상속주식’이라고 합니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의 산정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가업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을 특례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가업을 영위하던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주식은 동일한 수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특례대상 주식은 위에서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외 상속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때, 상속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요건(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을 유지<sup>10</sup>하거나 수증자인 자녀가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할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검토대상회사와 같은 법인가업의 경우는 주식가액 전부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용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현재는 10항)을 신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자산상당액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특례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서면법규과-173, 2014.02.26.)하도록 하고 있는 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에 각각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검토대상회사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이 약 100억 원이고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 10%로, '가업자산상당액'은 90억 원(=100억 원×90%), 일반증여재산가액은 10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증여한 보유지분 이외에 피상속인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50억 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이 30%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주식가액 및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 당시의 사업무관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90억 원이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은 98억 원[(90억 원+50억 원)×70%]으로 계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10</sup>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존의 예규와 다르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이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제5장 연부연납



1

당사는 2023년 중 당사의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여 5년간 연부연납 중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되어 연부연납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사의 경우에도 연부연납기간을 15년으로 소급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장남 1인에게 당사 및 계열사의 주식을 모두 증여한 후 제가 죽은 다음 유류분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yword**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및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및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즉시 환가하기가 곤란한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 중 질의하신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①과 ②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② '①' 외의 일반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600억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의 최대금액은 106억원으로 개정 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대금액인 16억원보다 약 90원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은 이외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달리 15년으로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과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외의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이므로 질의에서 언급한 대로 2023년 중 검토대상회사의 지분을 일반 증여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자가 연부연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5년의 연부연납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설령 일반 증여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증여재산에 대해 연장된 연부연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 2024년 1월 1일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질의에 대해 살펴보면 질의내용에 나와 있듯이 장남에게 모든 회사의 지분을 증여한 후 증여자의 사망 후에 유류분 권리자에 의해 유류분 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아무리 증여 등을 통해 검토대상회사 및 계열사 5곳의 사전 지분 정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어, 상속인 1인에게 주요 재산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산배분 및 속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렇듯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상증통 4-0...5)"이라고 함과 동시에,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이상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예컨대,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때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전증여를 받은 자의 증여재산은 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금액 중 유류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즉,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판결뿐만 아니라 상호합의로 유류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가업의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2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세액을 20년 동안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얼마 없을텐데 이 세액을 20년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건가요?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될 때 연부연납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도 포함되는지요?

**Keyword**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중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적용가능 여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비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았으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범위액과 연부연납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20년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바,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begin{array}{l} \text{연부연납할 수 있는} \\ \text{상속세 납부세액} \end{array}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 위 산식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상속받거나 받을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2021년 2월 17일 이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함]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 그리고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이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상속추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

- 이렇게 위 산식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된 세액을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이 업력에 따른 한도액(최대 600억원) 이내이고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최소비율'이라는 가정 하에 분자가 '0' 또는 '0'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상속재산이 포함된 연부연납에 대한 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반상속재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업상속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매우 높아 기업상속공제가 부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즉,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계산구조를 설계한 이유는 여러 차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업상속공제액 및 공제율이 과거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역시 현저히 감소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렇듯 거액의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에 기업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특례기간의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이 기업상속재산 이외의 일반상속재산에까지 미치게 되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식상 기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모두에 대해 무조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상속공제 후 연부연납 특례 요건을 갖춘 잔여기업재산에 대해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또한 기업상속재산 중 기업승계 특례주식이 있는 경우 문의하신 '① 기업승계 특례주식 가액 × (1 - 상속개시일의 사업무관비율)'이 분자의 기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② 기업승계 특례주식 가액이 분모의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문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은 없지만,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분자의 기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증여 당시의 평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서면법규과-173, 2014.2.26. 참조), 이는 곧 분자의 기업상속재산가액에는 "기업승계 특례주식의 평가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분모의 총자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6장

# 납부유예



**1**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인 아버지께서 사전증여를 통해 제게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셔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작년에 새로 도입되었다는 납부유예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 제도가 원래 있던 사전증여 혜택인 과세특례 세액에 대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인 건지요?

**Keyword** 증여세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세액



우선 우리나라의 세법상 생전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이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증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업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금액을 납부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의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저율의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그 주식 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 하되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⑰ 증여재산가액			⑳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⑱ 비과세재산가액			㉑ 세액공제 합계(㉒+㉓+㉔+㉕)	
과세가액 불산입	⑲ 공익법인 출연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세액 공제	㉒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⑳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㉓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㉑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㉔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㉒ 채무액			㉕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㉓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㉖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㉔ 증여세과세가액 (⑰-⑱-⑲-⑳-㉑-㉒+㉓)			㉗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 공제	㉕ 배우자		㉘ 납부지연가산세	
	㉖ 직계존속		㉙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㉗ 직계비속		㉚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⑳+㉑-㉒-㉓-㉔+㉕+㉖+㉗)	
	㉘ 그 밖의 친족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㉙ 혼인		㉛ 연부연납	
	㉚ 출산		현금	㉜ 분납
㉛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㉝ 신고납부		
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㉝ 과세표준 (㉔-㉕-㉖-㉗-㉘-㉙-㉚-㉛-㉜)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㉞ 세율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㉟ 산출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㊱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㊲ 산출세액 계(㉟+㊱)				
㊳ 이자상당액			세무서장 귀하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 우선 위의 서식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주식 등의 합계액인 '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㉖부터 ㉗까지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㉙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서식의 작성방법에서도 「㉚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작성방법에서는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2)”의 ㉙의 금액을 적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 <개정 2024. 3. 2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라. 수증자(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소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 현황			
수증일	수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가
			주식등 가액
			비고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 :			원

• 이에 아래의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2)”의 일부를 발췌해 서식 중 '㉙'의 금액을 추적해 보면 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계산된 증여세 납부세액<sup>1</sup>에 총

<sup>1</sup>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표2로서 이는 별지 제10호서식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을 보충·보완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관리번호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b>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b>	⑥ 가업자산상당액(① × ⑤)	
	⑦ 총 증여재산가액	
	⑧ 증여세 납부세액	
	⑨ 세액(⑧ × ⑥ ÷ ⑦)	

•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1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여기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 등을 증여받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일 것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합니다)을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을 것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일반세율 적용)를 유예하는 제도임을 유의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기업의 승계를 준비 중인 2세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작년에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정기간 끝나면 유예된 세액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지요?

**Keyword**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적용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면제여부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인이 승계받은 기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상속받은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되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장치 역시 마련해 두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업상속에 대신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말 그대로 상속받은 기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만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것이지 유예된 세액에 대한 면제효과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거주자가 납부유예의 적용요건<sup>2</sup>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업상속에 대신 상속세 납부유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인이 기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을 상속받았을 것
- ② 기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text{납부유예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 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 이 후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납부유예 후 납부사유’라고 합니다)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또는 징수)사유(사후관리 위배사유)	납부할 세액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개인기업)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기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세액 × 자산 처분비율(주1)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③ 상속받은 주식 등 지분 감소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받은 세액 × 지분 감소비율
④ 다음 ㉠, ㉡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⑤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참고로 기업상속공제와의 납부사유를 비교해 보면 납부(또는 징수) 사유, 즉 사후관리 위배사유 중 기업종사요건 위배는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기업상속공제와 달리 업종변경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자산유지요건을 위배하는 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법인가업까지도 상속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기업상속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요건의 경우 “5년 평균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70%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의 90% 기준과 차이가 존재하며,

지분유지요건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동일합니다.

-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납부유예 후 납부사유’의 ‘③’(상속인의 주식 등 지분 감소) 또는 ‘⑤’(해당 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의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승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sup>3</sup>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와 제7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보면 ‘가업상속공제방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후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납부유예’방식은 한도없이 납부유예를 적용 및 완화된 사후관리를 적용받는다는 이점이 있으나 반대로 이를 적용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제금액 없이 전체 상속세 뿐 아니라 검토기준일 현재 약 10.6%(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50%를 곱한 이자율)의 이자상당액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업종유지 또는 고용유지 요건이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한도없이 적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분유지 요건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납부유예된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sup>3</sup>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올이란 2023년 3월 20일 이후 1일 10만분의 29(연 10.585%)를 말합니다.



3

당사는 법인사업체로 현재 가업의 승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중 최근에 새로 도입된 납부유예제도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에 부담이 있어 조금 꺼려지는 면이 있는데 뉴스를 보니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납부유예도 사후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이 역시 추징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Keyword**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의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그 주식 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되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할 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질문하신 법인사업체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상속세의 납부사유'라고 합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 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sup>4</sup>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②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sup>5</sup>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4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합니다.)
- ②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 ③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③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 여기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세액} = A \times B \div C$$

A :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B : 감소한 지분율

C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③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④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참고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상속공제'의 납부(또는 징수) 사유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사후관리 위배사유 중 가업종사요건 위배는 5년 이상 대표이사로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업종변경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자산유지요건을 위배하는 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법인가업까지도 상속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가업상속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요건의 경우 "5년 평균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70%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의 90% 기준과 차이가 존재하며, 지분유지요건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동일합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결정적으로 다시 가업을 승계할 때 납부유예를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의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승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 후 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사유 및 상속세 징수사유<sup>6</sup>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 뿐 아니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하며, 최대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만 이자상당액이 계산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납부유예시 사후관리 중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다시 가업승계하는 경우 포함)”와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후관리기간이 없어 5년이 지난 후에도 이자상당액이 계속하여 가산되어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①’의 금액에 ‘②’의 기간과 ‘③’의

율(다시 가업승계하거나 및 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50%를 곱한 율을 적용합니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②의 기간 중에 ③「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① 결정한 상속세액 :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납부사유’에서 설명한 상속세액

②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른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2023년 3월 20일 이후 1일 10만분의 29로서 연 10.585%)

6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②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7장

# 기타

## 1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뉴스를 통해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결혼을 준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한도가 대폭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와 만약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질문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집값(전세값 포함) 상승으로 인한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제제도가 필요해졌고, 세법에서는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을 할 때 통합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같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①에서 ③을 더하여 최대 3.2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기존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인 5천만원을 양가에서 각각 증여함
  - ② 아래에서 설명할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인 1억원 양가에서 각각 증여함
  - ③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인 1천만원(예를 들어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에게,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에게)을 양가에서 각각 증여함
-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혼인일<sup>1</sup> 전후 2년 이내<sup>2</sup>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즉, 반환특례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1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① 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2 예컨대, 혼인신고일이 2024년 7월 12일인 경우 기산일은 2024년 7월 12일의 익일인 2024년 7월 13일이 되고 2년 기간의 만료일은 2026년 7월 14일이 되며,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일 전 2년은 2022년 7월 12일이 됩니다.

봅니다. 여기서 '반환특례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 약혼자의 사망
- ㉡ 「민법」 제804의 약혼해제 사유(예를 들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는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또한 혼인 전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 전 혼인 증여재산공제 후 혼인하지 않는 경우 : 혼인 전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의 증여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구분	세무처리
㉠ 가산세 부과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li> <li>(*)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합니다.</li> <li>•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제외</li> </ul>
㉡ 이자상당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기간(*)×2.2/10,000</li> <li>(*) 기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li> </ul>

- 혼인 증여재산공제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구분	세무처리
㉠ 가산세 부과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li> <li>(*)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합니다.</li> <li>•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제외</li> </ul>
㉡ 이자상당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기간(*)×2.2/10,000</li> <li>(*) 기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li> </ul>



• 이러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급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달리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을 받아도 되고 현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던 부동산을 구입하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증여받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도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및 결혼과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비과세 되는 항목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에 굳이 증여받은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비용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부모님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그 외 부분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한다면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증여자는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꼭 부모일 필요는 없으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공제 범위를 넘어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조부모가 우선 증여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분이 아닌 직계존속이 먼저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조부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가 늘어나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sup>3</sup>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즉,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3 '출생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하며, '입양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합니다.

## 2

저희 어머니께서는 금년 2월 26일에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셨고 현재 슬픔을 추스른 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인 2020년에 큰 누님에게 회원권과 주택을 증여하신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나름대로 조금 알아 본 결과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문이드립니다. 참고로 큰 누님은 작년 8월에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 Keyword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고율(高率)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자명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다음의 합산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함)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 질의하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모친께서 사망하기 전 큰 누님에게 회원권 등을 증여하였으며, 수증자인 큰 누님께서 작년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수증자인 큰 누님께서 모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자 이미 증여받은 회원권 등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수증자의 경우 상속인도 상속인 외의 자도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도 있어 업무상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6 제1항을 통해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증자인 큰 누님이 피상속인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할 때 해당 증여재산인 회원권 등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청방법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 이외에 신청 불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 ② 결과 조회 : 세금 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 3

얼마 전 주소지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와 관련된 소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명자료에는 제 명의의 부동산 증가액 및 금융재산 증가액 등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및 소득금액 등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소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명한 결과 기존 보유자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전세금 등이 출처가 증명된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고, 과세관청에서는 이와 자금출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백히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과세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Keyword**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자금출처의 입증은 다음의 금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 포함)받은 소득금액
  -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또한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sup>4</sup>’와 ‘②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도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① 취득재산가액의 20%’와 ‘②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납세자는 재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증빙서류만 제시할 뿐 자금 원천이 입증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의견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 매우 빈번한 상황입니다.

4 여기서 ‘일정액’이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이라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 종래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개정 후 법은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와 같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후 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명백하게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즉 증여자 없이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에 이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이라고 함으로써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특정하여 소명하지 않더라도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 및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지분 50 : 50으로 실질적으로는 공동대표이긴 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동업자인 김○○(가명)만 대표였고 저의 아버지였던 이○○(가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자문 신청합니다. 상속세를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yword** 상속세 신고시 지분확인 방법


먼저 아버지의 별세(사망)로 슬픔이 크시겠습니다. 선친분의 별세(사망)일이 2024년 4월 1일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2024년 4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먼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토지, 건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사망신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를 할 때 가까운 구청이나 읍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대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검토대상회사에 대한 출지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출지지분을 흔히 주권이라고 하는 데 대부분 비상장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 사업체로 전환할 때 자본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보통 주금 납입이라고 하며, 이는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입금증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에 주주등의 명세(별지 74호 서식)가 반드시 첨부되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 더불어 회사가 설립된 후 최초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를 제출하게 되며,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주식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매년 법인 결산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를 첨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니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를 보시고 선친께서 주주(출자자)인지 여부와 보유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5</sup>

- 이렇게 보유한 주식의 수를 확인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가 1순위이고 그 다음 2순위가 감정평가가액, 그 다음 3순위가 개별공시지가(토지, 건물은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가결산을 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주식평가를 실시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한 후 여기에 확인한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sup>6</sup>
- 상속세는 아버지의 사망일 현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재산(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자동차, 보험 등)과 사망일로부터 10년 전(前)에 사전 증여된 재산을 합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공제(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순차로 공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600억 한도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되 사후관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5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를 보면 주식 소유자와 소유 주식 수, 액면가를 알 수 있습니다.

6 검토대상회사의 경우 비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 주식 및 출지지분의 경우 감정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과 같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재직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
- ③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 즉,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기업운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사항으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피상속인인 이○○님은 법인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내이사로서만 등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로서는 단 하루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검토대상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아쉽게도 이○○님의 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를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상황이 안좋아 회사실적이 악화되어 베트남 현지법인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회로 금번에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세금신고의 목적으로 주식의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또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요?

#### Keyword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검토대상회사는 현재 완전자회사의 형태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창궐한 COVID-19 등의 대외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검토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sup>7</sup>. 하지만, 이는 곧 해당 주식이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인 장남에게 베트남 자회사의 주식을 이전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라고 해서 동 금액으로 무작정 양도가액을 정하게 되면 혹여나 추후 세무문제<sup>8</sup>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으며 이에 해외소재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외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국내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sup>9</sup>.

7 검토대상회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주식의 금액이 영(0)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종속기업주식을 “0”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8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양수자에게 같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문언상으로는 국외재산에 대하여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소재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 등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달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열거된 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며, 과세관청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더불어, 국외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 심판례 및 판례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그에 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와 국외재산 소재지국과의 회계처리규정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액의 산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국심 2005서38, 2006.4.13.)
  -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7두5646, 2010.1.14.).
- 즉, 대법원 등에서는 납세자가 국외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국외재산의 평가금액이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과세관청은 국외재산의 가액 산정시 시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시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국외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과세부과를 위한 평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과세부과를 위한 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가액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저는 올해 52세 가업승계를 한 2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형제들과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가업승계를 하였지만 상속 공제에 대한 특혜를 제가 아닌 다른 형제들이 받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Keyword** 상속세의 과세유형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의 계산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아래와 같이 유산과세형(Estate Type)과 취득과세형(Inheritance Type)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제도는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과세 *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분할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로 과세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과세 * 공동상속의 경우 분할된 각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누진세율로 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각 상속인의 취득한 유산가액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인격대표자	각 상속인
대표적인 입법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남긴 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에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상속인별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그 부담비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상속인·수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의 부담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상속세의 부담비율} = \frac{\text{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text{상속세 과세표준} - \text{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또한 아래 사례와 같이 각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구분	합계	배우자 (상속인)	자녀 (상속인)	손자 (상속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E영리법인	
① 상속재산의 가액	27,610,000,000	18,640,000,000	4,620,000,000	3,470,000,000	880,000,000	-	
② 비과세재산	880,000,000				880,000,000		
③ 과세가액 불산입	-						
④ 공과금	60,000,000	50,000,000	10,000,000				
⑤ 장례비	13,000,000	13,000,000					
⑥ 채무	1,5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⑦ 증여재산가액	1,200,000,000	700,000,000	-	-	-	500,000,000	
⑧ 상속세 과세가액 [(1)+(7)-(2)-(6)]	26,357,000,000	18,277,000,000	4,110,000,000	3,470,000,000	-	500,000,000	
⑨ 상속공제액	3,540,000,000						
⑩ 과세표준	직접배분	700,000,000	200,000,000	-	-	-	500,000,000
	안분	22,117,000,000	15,452,975,673	3,613,343,006	3,050,681,321	-	-
	합계	22,817,000,000	15,652,975,673	3,613,343,006	3,050,681,321		500,000,000
⑪ 산출세액	10,948,500,000						
⑫ 할증과세	-						
⑬ 산출세액합계(⑪+⑫)	10,948,500,000						
⑭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의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산출세액	90,000,000				90,000,000	
	공제한도	239,919,796				239,919,796	
	공제세액	90,000,000				90,000,000	
⑮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배분한 산출세액(⑬-⑭)	10,858,500,000	7,616,151,900	1,757,991,150	1,484,356,950			
⑯ 상속인 및 수유자의 증여세액공제	산출세액	30,000,000	30,000,000				
	공제한도	97,312,511	97,312,511				
	공제세액	30,000,000	30,000,000				
⑰ 신고세액공제	282,649,512						
⑱ 기납부세액	9,105,875,000	6,255,105,690	1,443,932,634	1,219,086,676			
⑲ 가산세	신고	298,972,488	209,697,051	48,406,603	40,868,835		
	불성실						
	납부 불성실	77,038,688	54,034,355	12,473,325	10,531,007		
⑳ 추가고지세액 (⑬-⑭-⑯-⑰+⑱)	1,815,986,664	1,273,719,365	294,026,200	248,241,098			

-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비록 가업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생전의 노력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업상속공제액을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가업상속인의 과세표준이 아닌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가업상속공제액을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는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방식이 취득과세가 아닌 유산과세의 과세유형을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산방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취득과세형으로 세법인 전환된다면 신청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현재 아버지께서 대표이사로 회사에 재직 중에 계시는데 속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추후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것인데 부친께서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염려하여 퇴직금을 받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의 포기가 아버지(대표이사)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eyword**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경제적 실질은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부친이 퇴직할 때 지급 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의 시점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나 후이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 차례로 봅니다.
- 우선 상속이 개시된 후에 받지 않기로 한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에 대해 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3971 판결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서도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그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즉, 검토대상회사의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에 등기임원인 현재 재직 중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이렇게 기재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sup>10</sup>

- 이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확정된 퇴직금을 생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또 다른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가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아버지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후 부친의 숙환상태와 현재 연령으로 보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됨을 예측할 수 있어 보수적으로 보아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검토대상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채무의 감소로 인한 순자산 증가분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고, 회사가 해당 채무(퇴직금)의 면제로 얻은 이익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친은 사망 이전에 이미 해당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증여로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친의 사망 이전에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sup>10</sup>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액이 계산될 수 있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정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부록 : 찾아보기

<b>[기타]</b>	2명 이상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180
	2차 가업상속공제의 가능 여부 123
<b>[가]</b>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이월과세 적용 194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업종요건 66
	가업상속공제 종합 38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중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적용가능 여부 24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3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세부담 차이 47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중 상속인 요건(대표이사 취임요건) 93
	가업상속재산의 유류분 청구와 유류분 보전 112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로 인한 업종변경 199
	가업재산의 재차 증여시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개정법률 적용 여부 185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자산가액 산정 50
	개인기업의 상속인 요건 89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상속인 요건 85
	개인사업자의 승계 146
	개인사업자의 증여세 과세특례 144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적용례 95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내용 및 사후관리기간의 적용방법 98

	고용유지요건의 사후관리 유지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프리랜서의 포함 여부 100
	곡물도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73
	공동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공동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 120
	과다보유현금, 외화예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214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사후 구제 방법 20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273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108
	기타비상근이사의 임원 해당여부 및 미등기 대표이사 등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 충족여부 91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내용 126
<b>[다]</b>	대습상속 21
<b>[미]</b>	명의신탁 증여의제 25
<b>[보]</b>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액의 세법상 효과 및 부담해야 할 지방세의 종류 등 27
	보유지분 전부 증여시 상속개시 106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승계 23
	부모 지분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70
	부부간 가업영위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 64
	부(父)와 모(母)가 함께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73

## 부록 : 찾아보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 201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 151

비상장회사가 SPAC과 합병 후 상장한 경우 주식보유요건 110

### [사]

사업무관자산, 최대주주할증평가 224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한 소규모 회사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검토 136

사업무관자산의 산정시점 234

사업무관자산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판단 140

사전 증여시 일반 증여 선택 15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간 선택 8, 1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여부 82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 80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256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적용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면제여부 252

상속세 신고시 지분확인 방법 270

상속세의 과세유형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의 계산 276

상속인 요건 중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87

상속인의 종신보험 및 임직원의 퇴직연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219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경우 해당 지분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114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18

손자(녀)에게 지분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76

수입부품으로 제조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중 업종요건 및 사후요건 중 업종유지요건에 미치는 영향 77

수증자 요건 중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주식의 수증자 183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 178

수증자의 사업체 법인전환 후 증여자의 사업 승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150

### [오]

유류분 청구소송이 이미 적용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117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231

### [지]

자산유지 요건과 관련한 개정 사후관리기간 적용 및 개인사업자의 이월과세 적용 103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267

정기예금 및 과다보유현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216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10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의미, 공동대표이사의 증여자 요건 충족 여부 164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및 취득 10년 미만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가능 여부 159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납부한 세액의 상속세액 계산시 처리방법 196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개시 후 정산 192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장 등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208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검토시 가업영위기간 156

## 부록 : 찾아보기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산일과 가업영위기간의 산정 방법 189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132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승계받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3

증여세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세액 248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 여부 206

증여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62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및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과세문제 240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265

**[대]** 최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추가 취득하여 10년이 안 된 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요건 중 최대주주 지분요건 충족 여부 167

**[카]** 카페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 해당 여부 69

**[테]** 특례대상 주식에 대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적용 235

**[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충족 여부 5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서 잠시 물러난 기간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6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5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279

**[하]** 해외위탁가공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업종분류 75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22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62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직원에게 대여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228



# 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상담 사례집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  
세종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http://www.kbiz.or.kr)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기획**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Tel) 02-2124-3165, 3146~7

**집필** 진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유효중, 고영무

**디자인**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www.maycom5.com](http://www.maycom5.com)

이 책자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